

소비자신용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

한국의대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 제3회 세미나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 제3회 세미나

소비자신용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

- 일시 - 2016년 10월 19일(수) 오후 2:00~6:00
- 장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 101호
- 주최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 한국소비자원
- 후원 -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 축 사 -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와 한국소비자원에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귀중한 발표와 토론을 해주시는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08년 세계경제를 격랑에 몰아넣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는 단순히 소비자 보호 차원의 문제를 넘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금이 꼭 필요하고 가장 유용하게 사용될 곳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이고, 자금의 회수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곳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금융회사들은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들을 악의적으로 활용하여 손쉬운 돈벌이, 과도한 수익추구에 나서게 됩니다. 금융취약계층을 볼모로 삼아 서브프라임 대출을 확대하고 이를 기초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금융공학의 마술을 부리던 월가는 결국 금융시스템의 처절한 붕괴와 경제의 대침체를 초래했습니다. 2010년에 미국의회가 일련의 금융개혁 조치들을 입법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국을 신설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상품의 판매나 대출 단계에서 우선 이루어져야 하고,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소비자 권익이 충분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특히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는 것은 금융소비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대출단계에서부터 신중한 태도를 취하게 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나 약탈적 대출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인권을 유린하는 과도한 추심 행위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백만명이 훨씬 넘는 서민이 장기연체자로서 빚에 쫓기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고통이 너무 심하여 가정이 파괴되거나 더욱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당하기도 합니다.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여 이러한 비극을 막고, 적극적인 채무탕감과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이들을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시키는 것은 인권과 사회정의의 위한 정치적 책무임과 동시에 서민경제의 회복과 활성화를 위한 경제적 선택입니다.

저는 장기연체자들을 빚의 굴레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채무탕감 운동과 채무조정 상담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단체 <주빌리은행>의 대표로서, 그리고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하여 정책을 연구하고 지식과 문화의 공유를 추진하는 협동조합이자 이번 세미나의 취지에 공감하고 이를 후원하는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의 이사장으로서, 오늘 뜻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해주시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이 가다듬어져서 입법화되고 제도화되기를 기대합니다.

2016. 10. 19

주빌리은행 대표,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
유종일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 제3회 세미나

- 소비자신용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 -

- 14 : 00 ~ 14 : 20 등록 및 접수

- 14 : 20 ~ 14 : 30 개회식
 - ▶ 축 사 - 제윤경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
유종일 이사장(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 ▶ 개회사 - 이병준 교수(한국외대 법전원, 소비자법센터 센터장)

- 14 : 30 ~ 15 : 30 제1세션
 - ▶ 사 회 - 이은영 교수(한국외대 법전원)
 - 【제1주제】 대부업 분쟁조정 명과 암
 - ▶ 발 제 - 최봉경 교수(서울대 법전원, 서울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제2주제】 소멸시효가 완성된 소비자신용채권의 추심
 - ▶ 발 제 - 정소민 교수(한국외대 법전원)

- 15 : 30 ~ 15 : 50 Coffee Break

- 15 : 50 ~ 16 : 50 제2세션
 - ▶ 사 회 - 이기종 교수(숙명여대 법과대학)
 - 【제3주제】 개정 대부업법의 주요내용 및 쟁점
 - ▶ 발 제 - 윤민섭 박사(한국소비자원)
 - 【제4주제】 EU소비자신용지침의 시행과 그 효과 - 유럽 금융소비자 권익변화를 중심으로
 - ▶ 발 제 - 김도년 박사(한국소비자원)

- 16 : 50 ~ 17 : 00 Coffee Break

- 17 : 00 ~ 18 : 00 종합토론
 - ▶ 사 회 - 가정준 교수(한국외대 법전원)
 - ▶ 토 론 - 김진우 교수(한국외대 법전원), 안수현 교수(한국외대 법전원)
김태선 교수(중앙대 법전원), 윤명 사무총장(소비자시민모임)
허유경 변호사(버지니아 로스쿨 S.J.D. Candidate)

- 18 : 00 폐회사 및 만찬

대부업 분쟁조정 명(明)과 암(暗)

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 제 3회 정기세미나
2016.10.19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봉경 교수

목차.

I	개요
I-1	대부업 분쟁조정제도 개요
I-2	분쟁조정 신청 및 진행 절차
I-3	분쟁조정신청서 작성 방법
I-4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경과
II	그간 분쟁조정실적
II-1	분쟁조정 결과
II-2	분쟁조정 신청인 현황
II-3	분쟁대상 대부업자 현황
II-4	그간 서울시 분쟁조정업무에 대한 평가
III	분쟁조정 결과 유형
III-1	대부거래시 주로 발생하는 문제점
III-2	연대보증계약 관련 분쟁조정 사례
III-3	중개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사례
[별첨]	대부업분쟁조정결정서 모음

I 개요

I-1. 대부업 분쟁조정제도 개요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서는 대부업자 등과 소비자간 분쟁 발생시 법원의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을 통한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지자체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

※ 제18조(분쟁 조정) ①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대부업자등과 거래상대방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대부업자등과 거래상대방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분쟁 조정의 절차·방법 등 분쟁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분쟁조정위원은 대부업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5명으로 구성

※ 대부업법 시행령 제11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금융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3. 소비자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금융·대부업 또는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5. 금융 또는 법학을 전공하여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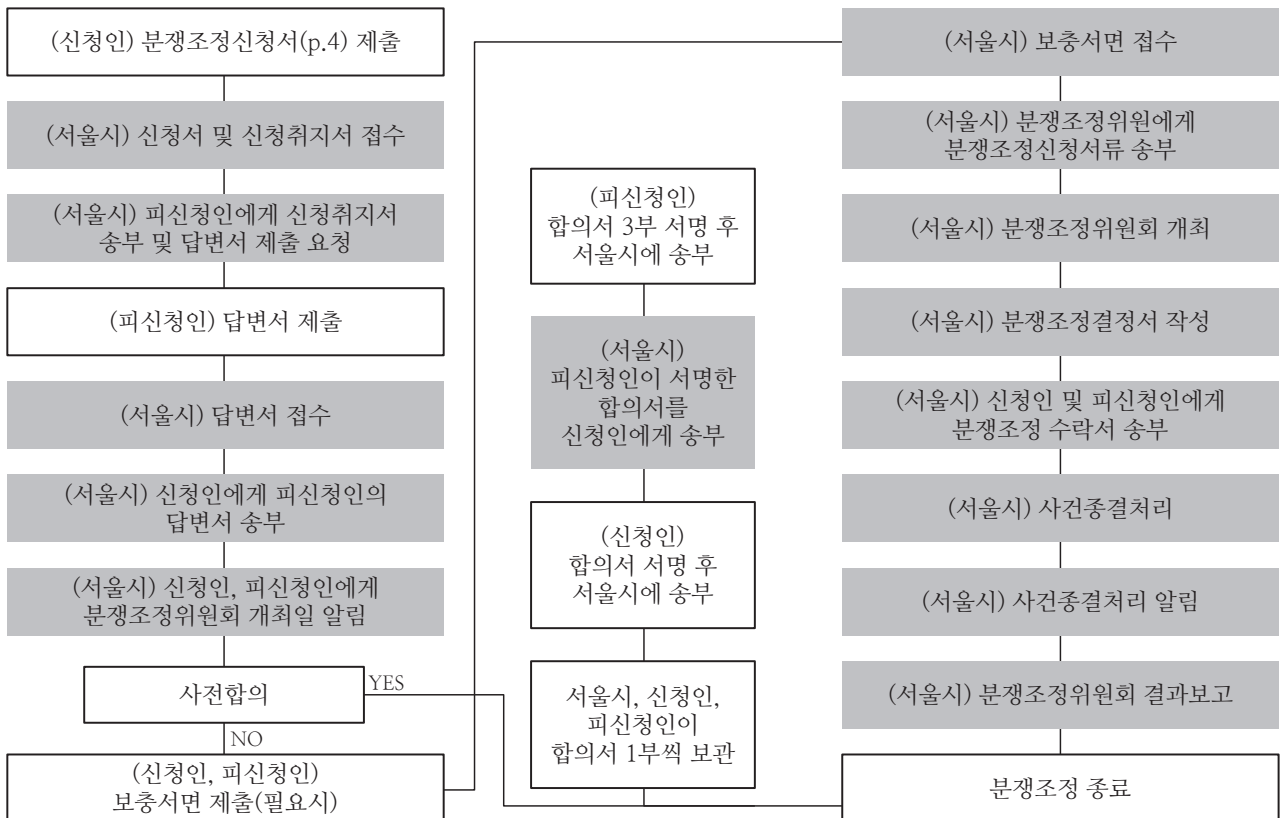
I 개요

[참고] 소비자 및 금융분야 주요 분쟁조정기관 비교

구분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자율분쟁 조정위원회	금융분쟁 조정위원회	대부업분쟁 조정위원회
소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	금융감독원	지자체
설치근거	소비자기본법 제60조	소비자기본법 제31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목적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 요청 사건 심의	민간단체의 자율조정기 능을 통한 신속·공정한 소비자피해 구제	금융회사와 금융이용자간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	대부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
위원수	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50인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효력	조정성립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 (강제집행력 有)	조정성립시 민법상 화해와 동일 (강제집행력 無)	조정성립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 (강제집행력 有)	조정성립시 당사자간 조정서 효력과 동일
특징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을 조정하며 분야별 전 문위원회 별도 설치	소비자 분쟁을 다루는 유일한 민간 조정기구로 서 다단계, 방문판매, 상 조 관련 분쟁을 주로 함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조정하며 분야별 전문위원회 별도 설치	분쟁해결 불가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에 조정 신청 가능

I 개요

I-2. 분쟁조정 신청 및 진행 절차



4/59

I 개요

I-3.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방법

□ 분쟁조정신청서 및 신청취지서에 분쟁조정 쟁점사항을 자세히 작성하고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

○ 분쟁조정신청서 및 신청취지서 양식(신청인이 다수인 경우 신청인 각각에 대하여 작성)

대부분쟁조정신청서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④ 성별
	⑤ 주소	법인 (전화:) 개인 (전화:) (전자우편 주소:)
신청대표자 또는 대리인	⑥ 상호(명칭)	
	⑦ 성명	
	⑧ 주소	(전화:)
피신청인	⑨ 상호(명칭)	
	⑩ 성명(대표자)	
	⑪ 주소	법인 개인
⑫ 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⑬ 분쟁의 경과		
⑭ 참고자료		1. 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이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위임장 3.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서울특별시 대부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신청취지서	
○ 신청인 :	
○ 피신청인 :	
○ 신청취지 :	
○ 별첨 : 증거자료	1. 2.

I 개요

I-3.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방법

○ 분쟁조정신청결정시 중요한 증거자료

- **계약서** : 채무자, 채권자, 계약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 서류
- **대부중개경로확인서** : 대부가 이뤄지는 과정에 참여한 주체를 확인(대부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상위. 하위대부중개업자가 누구인지 확인)
- **대부업자 녹취파일** : 대부업자가 본인여부 및 연대보증 의사를 신의성실하게 확인하였는지 여부를 점검(대부업자들이 연대보증 의사 확인 등을 위해 보관)
- **대부중개업자 녹취파일** : 대부중개업자가 계약성립을 위해 금리인하, 전환대출, 보증인 지위 삭제 약속 등 기망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점검. 다만, 일반적으로 대부중개업자는 영업내용을 녹취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이 대화내용을 녹취. 제출한 경우에만 자료로 활용 가능한 한계(녹취파일은 통상 대부중개업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작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계약서에 있는 서명이 자필서명이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주민센터 발급)를 통해 본인이 자필서명하지 않았음을 입증(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소극적 운영으로 인해 사실상 자필서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명'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 **채무자 녹취파일, 문자메세지** : 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강압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토록 하였는지, 채무자와 대부중개업자가 공모하여 기망행위 등을 통해 보증인을 입보시킨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
- **보증인 녹취파일** : 보증인이 대부중개업자 및 대부업자와 대화한 내용을 녹취, 제출함으로써 후자들의 계약성립 및 이행과정에서의 기망 내지 강박 여부 등을 확인(추심과정의 불법 여부도 확인)

7/59

I 개요

I-4.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경과

- 서울시는 '07년 7월 분쟁조정위원회를 최초 구성하고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을 제정
 - 다만, '07~'12년 기간 중에는 대부업 분쟁조정안건이 접수되지 않아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음
- '13년부터 분쟁조정안건이 접수되어 본격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 활동 개시
 - 대부업 시장 확대와 함께 대부업 이용자의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대부업 민원.상담이 증가하면서 분쟁조정 신청도 증가
 - '13년 중 57건의 분쟁조정 안건 접수
 - (32건: 위원회 회부전 합의, 16건: 위원회 조정결정, 9건: 취하 등 처리)
- '14년 이후 분쟁조정안건 접수가 크게 증가하고 분쟁조정 사례가 누적되면서 대부업자의 분쟁조정결과 수용도 제고
 - 분쟁조정 안건 접수가 '13년 57건에서 '14년 343건으로 크게 증가
 - 특히, 자필서명이 없는 연대보증계약의 경우 대부업자가 보증금액의 70% 상당을 면제하는 조정결과(3:7 Golden Ratio)가 업계 관행으로 정착되면서 분쟁조정위원회 회부전 사전합의도 크게 증가('13년 32건→'14년 221건)
- '15년 하반기 이후 대부계약 관행 개선, 분쟁조정 접수전 사전조정 활성화 등 영향으로 분쟁조정 신청이 감소
 - '16년 7월 대부업체 관할이 금융위/지자체로 이원화되면서 향후 연대보증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수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

8/59

II 분쟁조정실적

II-1. 분쟁조정 결과

□ 분쟁조정 실적

- '13년부터 '16.7.24.(7.25.부터 관할기관이 이원화)까지 총 556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하여 450건을 분쟁조정위원회 회부하거나 사전합의에 의해 조정
 -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83건, 회부전 사전합의 367건, 조정중지 78건, 취하 27건, 각하 1건

연도별 분쟁조정 실적

(단위: 건)						
연도	분조위회부	사전합의	조정중지	취하	각하	합계
2013	16	32	8	1	-	57
2014	53	221	51	18	-	343
2015	11	91	16	7	1	126
2016	3	23	3	1	-	30
합계	83	367	78	27	1	556

9/59

II 분쟁조정실적

II-1. 분쟁조정 결과

-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거나 사전합의로 구제된 채무금액은 1,521백 만원으로 분쟁금액 2,087백 만원의 **72.9%**에 이룸
 -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채무금액은 413백 만원으로 이 가운데 281백 만원(68.1%)을 면제
 - 분쟁조정위원회 회부전 사전합의된 사건의 총 채무금액은 1,674백 만원이며, 이 가운데 1,240백 만원(74.0%)을 면제

※ 분쟁조정신청인 1인당 대부업자별 분쟁금액은 평균 464만원 수준
 - 분쟁조정 결과 신청인은 평균 338만원을 채무를 탕감받음.

II 분쟁조정실적

II-1. 분쟁조정 결과

연도별 분쟁조정결과 구제금액

(단위: 백만원, %)

연도	구분	원채무	잔존채무 (A)	신청인		
				부담금액	구제금액(B)	구제율(B/A)
2013	분조위원회	72	74	17	57	77.2
	사전합의	135	135	19	116	86.1
	소계	207	209	36	173	82.9
2014	분조위원회	270	270	102	167	62.0
	사전합의	1,036	1,007	275	732	72.7
	소계	1,306	1,277	378	899	70.4
2015	분조위원회	79	68	15	53	77.8
	사전합의	418	389	98	291	74.7
	소계	497	458	114	344	75.2
2016	분조위원회	30	-	-	3	-
	사전합의	138	143	42	101	70.6
	소계	168	143	42	104	72.6
총 합	분조위원회	451	413	135	281	68.1
	사전합의	1,727	1,675	435	1,240	74.0
	합계	2,178	2,087	569	1,521	72.9

주) 2016년 분조위원회건 채무 완납 후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정된 건으로 구제율을 산정하기 곤란

II 분쟁조정실적

II-2. 분쟁조정신청인 현황

□ 분쟁조정 신청인은 30대 남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총 분쟁조정신청 556건 가운데 30대인 신청인이 280건으로 과반수(50.4%)를 차지하며, 특히 30대 남성 신청인이 222건(39.9%)에 이릅니다

분쟁조정 신청인 연령·성별

(단위: 명)				(단위: %)			
연령	남	여	합계	연령	남	여	합계
20대	35	32	67	20대	6.3	5.8	12.1
30대	222	58	280	30대	39.9	10.4	50.4
40대	91	43	134	40대	16.4	7.7	24.1
50대	41	22	63	50대	7.4	4.0	11.3
60대	10	2	12	60대	1.8	0.4	2.2
합계	399	157	556	합계	71.8	28.2	100.0

□ 여성의 경우 20대 신청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30대 이상은 여성 비율이 25.6%에 불과하나, 20대는 47.8%에 이르러 젊은 연령에서 대부업 부채에 대한 취약성을 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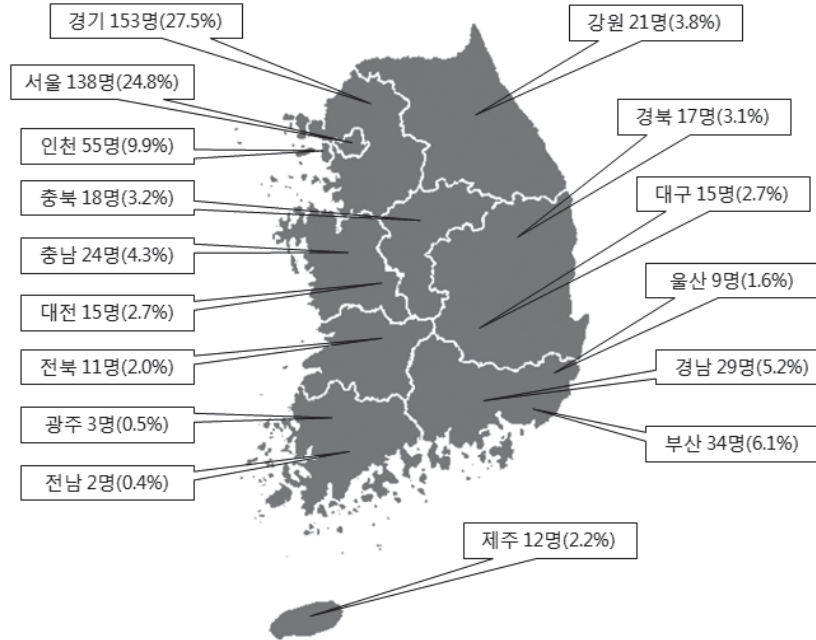
20대 vs 30대 이상 성별 비교

(단위: 명)				(단위: %)			
연령	남	여	합계	연령	남	여	합계
20대	35	32	67	20대	52.2	47.8	100.0
30대 이상	364	125	489	30대 이상	74.4	25.6	100.0
합계	399	157	556	합계	71.8	28.2	100.0

II 분쟁조정실적

II-2. 분쟁조정신청인 현황

- 분쟁조정 신청인 주거지역은 전국에 고르게 분포
- 분쟁조정 신청인 주거지역은 수도권 지역(62.2%)이 대부분이나, 非수도권(37.8%) 주민도 서울시 소재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분쟁조정을 다수 신청



13/59

II 분쟁조정실적

II-3. 분쟁대상 대부업자 현황

- 분쟁조정신청 556건의 피신청인(대부업자)은 66개
- 연대보증 입보를 활발히 하는 **소수 대형 대부업자**에 분쟁조정 피신청이 집중되는 형태 (상위 10개 대부업자 분쟁조정 피신청 건수 : 291건(52.3%))
- 대부업자 66개 가운데 개정 대부업법('16.7.25.시행)에 따라 관할이 금융위로 **이관된 대부업자는 49개(74.2%)**
- 분쟁조정신청건수 기준으로는 금융위 이관대상 대부업자에 대한 신청 건수가 총 556건 가운데 499건(89.7%)을 차지

분쟁조정 피신청 대부업자 현황

'16.7.25.이후 관할	대부업자 수	분쟁조정신청건수
금융위	49	499
지자체	17	57
합계	66	556

14/59

II 분쟁조정실적

II-3. 분쟁대상 대부업자 현황

□ 자치구별로는 강남구 소재 대부업자에 대한 분쟁조정 건수가 305건으로 과반(54.8%)을 차지

○ 강남, 마포, 종로, 구로, 서초 등 상위 5개 자치구 분쟁조정신청이 517건(92.9%)으로 대부분을 차지

자치구별 분쟁조정 피신청건수 현황

소속 자치구	'16.7.25.이후 관할		합 계
	금융위	지자체	
강남구	258	47	305
마포구	80	-	80
종로구	61	-	61
구로구	55	-	55
서초구	13	3	16
송파구	10	1	11
성동구	8	-	8
영등포구	7	-	7
기 타	7	6	13
합 계	499	57	556

15/59

II 분쟁조정실적

[참고] 대부업 현황 ('15년도 하반기 대부업 행자부·금융위·금감원 실태조사 기준)

1. 대부업자 등록현황

(단위: 개, %)

구분	'12.12말	'13.12말	'14.12말	'15.6말(A)	'15.12말(B)	증감(B-A)	증감율
대부업	7,872	7,002	6,676	6,656	6,575	△81	△1.2
대부중개업	1,765	1,328	1,051	1,093	1,130	37	3.4
대부·대부중개 겸업	1,258	996	967	1,013	1,047	34	3.4
합 계	10,895	9,326	8,694	8,762	8,752	△10	△0.1

2. 대부잔액 및 거래자수 현황

(단위: 억 원, (만 명))

구분	'12.12말	'13.12말	'14.12말	'15.6말(A)	'15.12말(B)	증감(B-A)	증감율
법인	81,954 (235.6)	95,050 (233.9)	105,733 (234.7)	117,435 (246.7)	125,995 (253.2)	8,560 (6.5)	7.3% 2.6%
자산 100억 원 이상	75,845 (228.0)	88,604 (226.4)	99,254 (227.3)	109,623 (237.6)	117,820 (244.1)	8,197 (6.5)	7.5% 2.7%
자산 100억 원 미만	6,109 (7.6)	6,446 (7.5)	6,479 (7.4)	7,812 (9.1)	8,175 (9.2)	363 (1.1)	4.6% 1.1%
개인	4,949 (15.0)	5,110 (14.7)	5,859 (14.6)	5,966 (14.7)	6,457 (14.7)	491 (0.0)	8.2% 0.0%
합 계	86,904 (250.6)	100,160 (248.6)	111,592 (249.3)	123,401 (261.4)	132,452 (267.9)	9,051 (6.5)	7.3% 2.5%

16/59

II 분쟁조정실적

[참고] 대부업 현황 ('15년도 하반기 대부업 행자부·금융위·금감원 실태조사 기준)

3. 신용등급별 대부현황

구분	'14.12말		'15.6말		'15.12말	
	거래자수	비중	거래자수	비중	거래자수	비중
1~3등급	40	0.0	8	0.0	6	0.0
4~6등급	317,859	21.6	325,563	21.4	344,425	22.1
7~10등급	1,155,194	78.4	1,198,889	78.6	1,212,712	77.9
합계	1,473,093	100.0	1,524,460	100.0	1,557,143	100.0

II 분쟁조정실적

[참고] 대부업 현황 ('15년도 하반기 대부업 행자부·금융위·금감원 실태조사 기준)

4. 신용·담보대부별 금리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12.12말	'13.12말	'14.12말	'15.6말(A)	'15.12말(B)	증감(B-A)	증감율
법인	신용	71,733	83,277	92,174	103,287	110,609	7,322	7.1
	담보	10,221	11,773	13,559	14,148	15,386	1,238	8.8
자산 100억원 이상	신용	68,220	79,495	89,009	99,757	106,918	7,161	7.2
	금리	36.1%	35.2%	32.6%	30.6%	30.4%	△0.2%p	-
	담보	7,625	9,109	10,245	9,866	10,902	1,036	10.5
	금리	12.7%	13.0%	13.6%	12.9%	13.6%	0.7%p	-
자산 100억원 미만	신용	3,513	3,782	3,165	3,530	3,691	161	4.6
	금리	26.4%	24.8%	25.0%	23.7%	21.2%	△2.5%p	-
	담보	2,596	2,664	3,314	4,282	4,484	202	4.7
	금리	21.1%	21.5%	21.1%	19.8%	20.3%	0.5%p	-
개인	신용	1,419	1,015	1,642	1,694	1,703	9	0.5
	금리	25.8%	26.4%	18.3%	17.8%	17.4%	△0.4%p	-
	담보	3,530	4,095	4,217	4,272	4,754	482	11.3
	금리	26.4%	24.0%	23.5%	22.9%	22.3%	△0.6%p	-
합계	신용	73,152	84,292	93,816	104,981	112,312	7,331	7.0
	금리	35.4%	34.6%	32.1%	30.2%	29.9%	△0.3%p	-
	담보	13,752	15,868	17,776	18,420	20,140	1,720	9.3
	금리	17.8%	17.2%	17.3%	16.8%	17.1%	0.3%p	-
	총대부	86,904	100,160	111,592	123,401	132,452	9,051	7.3
	금리	32.7%	31.9%	29.8%	28.2%	28.0%	△0.2%p	-

(대부업 최고금리): (39%) (39%) (34.9%) (34.9%) (34.9%)

II 분쟁조정실적

[참고] 대부업 현황 ('15년도 하반기 대부업 행자부·금융위·금감원 실태조사 기준)

5. 대형 대부업체 이용자별 신규 대부

(단위: 억원)

구 분	대부목적					합계	'15.12월 비중(A)	'15.6월 비중(B)	증감 (A-B)
	생활비	사업 자금	타대출 상환	물품 구매	기타				
회사원	14,043	712	1,591	211	2,423	18,980	67.9%	68.4%	△0.5%p
자영업	2,087	2,734	375	163	635	5,994	21.5%	21.3%	0.2%p
주 부	1,711	143	169	16	214	2,253	8.1%	6.8%	1.3%p
기 타	250	149	146	4	163	712	2.5%	3.5%	△1.0%p
합 계	18,091	3,738	2,281	394	3,435	27,939	100.0%	100.0%	-
'15.12월 비중	64.8%	13.4%	8.2%	1.4%	12.3%	100.0%			
'15.6월 비중	63.3%	14.2%	8.8%	1.0%	12.7%	100.0%			
증 감	1.5%p	△0.8%p	△0.6%p	0.4%p	△0.4%p	-			

* 신규대부 이용자 현황을 제출한 개인대부 취급 위주 72개사의 '15년 하반기 중 신규대부액 기준

II 분쟁조정실적

II-4. 그간 서울시 분쟁조정업무에 대한 평가

-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분쟁조정위원회를 활발히 운영
 - 현재 17개 시·도 가운데 7개(서울, 부산, 인천, 대전, 강원, 충북, 경기)에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실제 분쟁조정 안건을 접수·처리하는 위원회는 서울시가 유일
- 전화동의 후 자필서명 하지 않은 연대보증건에 대하여 보증인 책임을 30%로 제한하는 업계 관행 정착
 - 이에 따라 '15년부터는 자필서명 없는 연대보증 분쟁건이 위원회 접수 또는 접수 후 회부전 자율적으로 사전합의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

※ 전화동의 후 자필서명 하지 않은 연대보증건에 대한 일반적인 소송진행 사례

① 대부업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전환)

② 연대보증인은 자필서명하지 않은 연대보증이 무효임을 주장

* 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③ 대부업자가 계약무효의 경우에 대비해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변경

④ 재판부는 연대보증인이 전화통화시 연대보증에 동의한 책임을 인정하여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일정치는 않으나 통상 50% 전후의 책임을 인정

II 분쟁조정실적

II-4. 그간 서울시 분쟁조정업무에 대한 평가

□ 소비자 입장을 우선하는 대부문화 정착 노력

대부업 이용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실질적인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채무금액을 상당히 조정함으로써 채무자·대부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대부문화정착 노력

II 분쟁조정실적

[참고] 서울시 대부업 분쟁조정 관련 신문 보도

한겨레

2015년 10월 12일 월요일 016면 종합

서울시 빼고...‘대부업 분쟁조정위’ 없거나 이름만 있거나

17개 광역단체중 운영 한곳뿐

대부업법엔 기구 설치 명시

대구·광주 등 8곳 위원회조차 없어

부산·인천 등은 3년간 실적 전무

대부업체와 대출자 사이의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를 운영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전국에서 서울시 단 한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 대부업법에 명시돼 있는 조정위를 설치하지도 않은 광역자치단체가 절반이 넘었다.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광역자치단체 17곳으로부터 받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여부 및 운영 실적' 자료를 보면, 서울에서서만 최근 3년간(2013년

~2015년 8월) 510건의 조정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선 단 한곳도 조정위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 조정위는 금리 상한 위반, 불법 채권 수집 등 대부업체와 대출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적 다툼을 벌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기관을 통해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이다. 대부업법은 2002년 제정 당시부터 '대부업자와 거래 상대방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시·도지사가 금융전문가 등으로 5명의 위원 구성해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속으로 조정위를 둘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 광주, 충북, 충남, 경북, 전북, 제주 등 8곳의 광역자치단체는 설정법을 어겨며, 위원회조차 설치하지 않고 있다. 부산,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강원은 조정위를 설치했지만

근 3년간 운영 실적이 전무하다. 경남과 전남은 설치 여부 등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의 의원은 "법에 따라 지자체가 해야 할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된다. 특히 조정위를 구성조차 하지 않은 것은 위법으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업체 이용자는 2013년 248만5900명에서 지난해 249만3400명으로 늘었다. 대부업체들의 대부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대부업 분쟁조정 '눈물그만사이트' '120'에 신청하세요

2015년 4월 1일

30대 회사원 최모씨는 직장 동료의 대출계약서 신원확인만 해달라는 부탁과 대부중개업자의 보증계약이 아니라는 말을 믿고 전화상으로 동의를 해줬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연대보증인이 됐다. 그 후 동료가 연락 두절 상태가 되자 몇 달 뒤 최씨는 대부업체 5곳으로부터 총 1000만원 을 갈아라는 추심을 받았다. 최씨는 서울시 대부업 분쟁조정제도에 조정을 신청했고, 서울시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는 대부업체와 최씨의 의견을 종합해 최씨의 보증 채무 일부를 면제토록 중재했다.

서울시는 2013년 4월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대조위)를 설치한 후 올해 2월까지 125명으로부터 427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접수해 처리한 결과 105명의 시민이 진 빚 10억 300만원을 탕감

했다고 1일 밝혔다. 대조위는 고금리나 연대보증 등으로 과도한 빚을 진 소비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대부업체와의 증거 절차를 거쳐 보증 채무를 덜어주는 역할을 하며,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개설했다. 조정 사례를 살펴보면 연대보증 대출 관련 피해가 대다수며,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지만 빚을 떠안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신고 사례 중 연대보증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대부업체가 빠르게 안내하는 전화 질문에 형식적으로 답을 하고, 계약서에도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우 대조위는 자필 서명이 없는 보증 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대부업체의 기망행위, 추심행위의 위법성, 보증인의 고의적 위법행위 여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적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무 면액의 비율을 결정했다. 분쟁

조정 신청은 다산콜센터 120이나 '눈물그만' 사이트(economy.seoul.go.kr/tearstop)로 하면 된다.

대조위 위원장인 최봉경 서울대 민법학교수는 "위원회는 금융 분쟁을 법리와 현실을 고려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선진적인 금융 피해 구제시스템"이라면서 "결정 사례가 누적·유형화되고 있어 이를 통한 시민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연대보증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하지만, 대부중개업자의 일점 기간 후 연대 보증계약이 자동 취소되거나 연대보증은 폐지돼 보증상환이 아니라는 식의 험위·기만행위로 인해 피해가 줄고 있지 않다면 주의를 당부했다.

Ⅲ 분쟁조정 결과 유형

Ⅲ-1. 대부거래시 주로 발생하는 문제점

- ❖ 대부업 분쟁조정은 연대보증계약과 관련하여 주로 발생
 - ▶ 분쟁조정신청건은 대부분 연대보증인이 자필서명하지 않은 연대보증계약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 경우 보증계약 체결 과정에서 대부중개인이 연대보증인을 기망한 사례(일정기간후 금리인하·전환대출 가능 등)도 다수 발견됨

가. 대부업자의 연대보증부 대부

□ 대부업자의 연대보증부 대출은

- (1) 비대면심사,
- (2) 원본계약서 작성완료 전 대출실행 관행 등으로 인해 분쟁발생 소지가 매우 큼

Ⅲ 분쟁조정 결과 유형

Ⅲ-1. 대부거래시 주로 발생하는 문제점

연대보증부 대출 절차 및 분쟁발생 가능성

대출절차(예시)	문제점
<input type="checkbox"/> 대부신청인(A)이 대부(중개)업자에게 대부 신청 <input type="checkbox"/> 대부업자가 대출신청서류 검토 <input type="checkbox"/>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서를 A에게 팩스로 송부. 연대보증 필요시 연대보증인(B) 입보를 요구	▶대부신청인의 대부심사가 충분한 자료 없이 비대면으로 이뤄지면서 변제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음
<input type="checkbox"/> A는 B에게 연대보증 입보를 요청하고 A 및 B는 각각 대부계약서 및 연대보증계약서를 대부업자에게 팩스로 회신	▶대부신청인이 기망, 협박 등을 통해 무리하게 연대보증인을 입보시키는 사례가 있음
<input type="checkbox"/> 대부업자는 B에게 전화하여 연대보증의사의 진정성을 확인(녹음) 하고 A에 대한 대출을 승인	▶연대보증인은 연대보증제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전화녹취에 응하는 사례가 있음
<input type="checkbox"/> 대부업자는 A에게 대출금 송금 <input type="checkbox"/> 대부업자는 A와 B에게 원본계약서를 발송하고 자필서명 요구 <input type="checkbox"/> A와 B는 자필서명후 대부업자에게 원본계약서 회신	▶대부업자는 원본계약서 자필서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을 실행 ▶대부신청인이 연대보증계약서를 대신 수령하여 무단으로 대리서명하는 사례가 있음

Ⅲ 분쟁조정 결과 유형

Ⅲ-1. 대부거래시 주로 발생하는 문제점

가. 대부중개회사 직원의 기망행위

□ 대부중개업자는 대부계약을 많이 성사시킬수록 수수료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대부중개업체 직원의 불법·기망 영업행위가 빈번하게 발생

○ 대부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업무를 하위 대부중개업자에게 재위탁하는 사례가 많고, 대부중개업자 직원은 단기간 계약직으로 근무 후 이직하는 사례가 많아 실제로 대부중개업자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

Ⅲ 분쟁조정 결과 유형

Ⅲ-1. 대부거래시 주로 발생하는 문제점

대부중개업자 직원의 불법·기망행위 사례

불법·기망행위 주요내용	사실확인
▶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연대보증계약서를 작성해도 실제로는 연대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면 연대보증책임을 있음
▶ 연대보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참고인, 신원보증인, 입금동의인에 불과하다.	
▶ 2개월만 지나면 연대보증책임을 자동으로 없어진다.	연대보증책임을 대출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
▶ 1개월만 지나면 저축은행의 저금리대출로 전환(환승)되는 상품이다.	대부업자 대부를 저축은행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상품은 없음
▶ 대부업 대출을 받으면 신용도가 올라간다.	대부업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는 없음
▶ 500만원이 필요해도 1,000만원 대부를 신청하는 것이 신용등급에 유리하다.	대부금액이 증가하면 신용등급에 유리하지 않고, 오히려 과잉대부에 따른 이자부담으로 재무상황이 악화되는 사례가 많음
▶ 500만원이 필요해도 1,000만원 대부를 신청해야 500만원이라도 대부를 받을 수 있다.	
▶ 대부업자가 전화하면 “네, 네”하고 동의만 해주면 된다.	연대보증인이 전화로 연대보중에 동의하면 계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더라도 추후 대부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
▶ 대부업자가 전화하면서 연대보중에 동의하는 과정은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다.	
▶ 연대보증계약서는 원래 채무자나 대부중개인이 작성하는 것이다.	연대보증계약서는 연대보증인이 필수 기재사항, 서명을 자필로 작성해야 함
▶ 연대보증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형식적인 것이고 실제 내용은 중개인 말을 들으면 된다.	연대보증인은 연대보증계약서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함

Ⅲ 분쟁조정 결과 유형

Ⅲ-2. 연대보증계약 관련 분쟁조정 사례

❖ 대부업 분쟁조정건은 대부분 자필서명이 없는 연대보증계약 관련 분쟁으로 주로 다음 사항(keydrivers)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비율을 결정

- ▶ 자필서명 : 대출계약서, 보증계약서에 연대보증인의 자필서명 기재 여부
- ▶ 유선동의 : 대부업자와 전화통화시 보증인이 연대보증에 동의했는지 여부
- ▶ 채권자 과실 : 대부업자가 연대보증인 본인확인을 위해 얼마나 주의를 기울였는지, 과도한 추심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 ▶ 채무자, 중개인의 기망 : 채무자나 대부중개업자가 보증인을 입보시키는 과정에서 기망행위나 강요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 ▶ 보증인 과실 : 보증인이 연대보증 입보 여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여부
- ▶ 보증인 여건 : 보증인의 변제능력, 생활여건, 의사능력 등 고려

27/59

Ⅲ 분쟁조정 결과 유형

Ⅲ-2. 연대보증계약 관련 분쟁조정 사례

가. 보증인책임 전액 면제 (신청인 책임 : 0%)

신청인 과실비율 0% 사례 분석

구분	대표 사례(예시)
자필서명	없음 (보증계약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
신청인 유선동의	대부분 전화로 연대보증에 동의한다고 답변
채권자 과실	전화통화 이외에 보증인 본인확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
채무자, 중개인의 기망행위 등	연대보증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거나, 단기간에 보증책임이 없어진다고 하는 등 불완전판매(기망 등)행위를 수반. 회사대표, 직장상사가 연대보증 입보를 종용하는 등 사실상 강요행위가 있었음
신청인 과실	신청인은 전화로 보증에 동의한 것 이외에 특별한 과실이 없음
신청인 여건	대부분 변제능력 부족, 사회초년생, 장애 등 여건이 어려운 상황

28/59

Ⅲ 분쟁조정 결과 유형

Ⅲ-2. 연대보증계약 관련 분쟁조정 사례

가. 보증인책임 전액 면제 (신청인 책임 : 0%)

□ [사례 1] 신청인('92년생,女)은 대부업자와 전화통화시 연대보중에 동의하였으나 자필서명이 없는 점, 주채무자의 입보 강요행위, 채권자 부주의 등을 감안하여 보증인 부담을 전액 면제 결정(원채무액 600만원)

○(신청인) 고교졸업 후 얼마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으로서 직장상사의 계속되는 '연대보증'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채권자의 전화녹취에 응하여 자필서명 의사를 사실과 다르게 거짓 시인하였음

○(대부업자) 신청인의 보증계약서상 자필서명 여부를 보증인과 전화통화 방법으로만 확인했을 뿐 자필서명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보증계약서 및 대부계약서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교부한 과실이 인정됨

□ [사례 2] 신청인('77년생,男)은 대부업자와 전화통화시 연대보중에 동의하였으나 자필서명이 없는 점, 지적 장애(정신지체장애 3급)로 인해 의사능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보증인 부담을 전액 면제 결정(원채무액 2,000만원)

○(신청인) 주채무자.대부중개인이 공모하여 신청인에게 연대보증 입보를 강요하고 의사무능력 사실을 은폐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음

○(대부업자) 신청인의 보증계약서상 자필서명 여부를 보증인과 전화통화 방법으로만 확인했을 뿐 자필서명의 진정성 여부나 의사능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

29/59

Ⅲ 분쟁조정 결과 유형

Ⅲ-2. 연대보증계약 관련 분쟁조정 사례

가. 보증인책임 전액 면제 (신청인 책임 : 0%)

□ [사례 3] 신청인('72년생,男)이 명의를 도용당해 대부 및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고, 자필서명이나 전화통화 사실도 없는 점을 감안하여 대부 및 보증채무 부담을 전액 면제 결정(원채무액 700만원)

○(신청인) 신청인의 친척인 명의도용인은 신청인의 통장과 휴대전화를 빌려간 후 몰래 대출 및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주채무자가 사망하여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명의도용 대출 및 연대보증계약 사실이 드러났음

○(대부업자) 신청인의 대부 및 연대보증계약서상 자필서명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

30/59

Ⅲ 분쟁조정 결과 유형

Ⅲ-2. 연대보증계약 관련 분쟁조정 사례

나. 보증인책임 대부분 면제 (신청인 책임 : 10~15%)

신청인 과실비율 10~15% 사례 분석

구분	대표 사례(예시)
자필서명	없음 (보증계약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
신청인 유선동의	전화로 연대보증에 동의한다고 답변
채권자 과실	전화통화 이외에 보증인 본인확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대출심사에 있어서 현저한 부주의가 있었거나, 과도한 추심행위가 인정됨
채무자, 중개인의 기망행위 등	채무자가 신청인을 기망(투자사기 등)하였거나, 개인회생절차 진행중으로 사실상 채무변제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게 추가대출을 승인했음
신청인 과실	신청인은 전화로 보증에 동의한 것 이외에 특별한 과실이 없음
신청인 여건	변제능력 부족, 신체장애 등 여건이 어려운 상황

Ⅲ 분쟁조정 결과 유형

Ⅲ-2. 연대보증계약 관련 분쟁조정 사례

나. 보증인책임 대부분 면제 (신청인 책임 : 10~15%)

□ [사례 4] 신청인('62년생,男)은 대부업자와 전화통화시 연대보증에 동의하였으나 자필서명이 없는 점, 주채무자의 사기행위, 채권자 부주의 및 과도한 추심 등을 감안하여 보증인 부담을 90% 면제 결정(원채무액 500만원)

○(신청인) 주채무자의 투자사기 권유에 속아 연대보증 입보에 동의하고 채권자의 전화녹취에 응하여 자필서명 의사를 사실과 다르게 거짓 시인하였음.

○(대부업자) 신청인의 보증계약서상 자필서명 여부를 보증인과 전화통화 방법으로만 확인했을 뿐 자필서명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신청인의 직장에 전화하여 불미스러운 언사를 사용한 과도한 추심행태가 인정됨

□ [사례 5] 신청인('85년생,男)은 대부업자와 전화통화시 연대보증에 동의하였으나 자필서명이 없는 점, 채권자의 대출심사시 현저한 부주의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보증인 부담을 85% 면제 결정(원채무액 1,200만원)

○(신청인) 주채무자의 연대보증 입보에 동의하고 채권자의 전화녹취에 응하여 자필서명 의사를 사실과 다르게 거짓 시인하였음.

○(대부업자) 신청인의 보증계약서상 자필서명 여부를 보증인과 전화통화 방법으로만 확인했을 뿐 자필서명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중이고 다중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변제능력이 상당히 취약함에도 자격심사를 게을리 하여 대출을 실행한 부주의가 있었음

Ⅲ 분쟁조정 결과 유형

Ⅲ-2. 연대보증계약 관련 분쟁조정 사례

다. 보증인책임 상당부분 면제 (신청인 책임 : 20%)

신청인 과실비율 20% 사례 분석

구분	대표 사례(예시)
자필서명	없음 (보증계약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
신청인 유선동의	전화로 연대보증에 동의한다고 답변
채권자 과실	전화통화 이외에 보증인 본인확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대출 심사에 있어서 현저한 부주의가 있었거나, 과도한 추심행위가 인정됨
채무자, 중개인의 기망행위 등	직장상사인 채무자가 연대보증이 아니라하며 입보를 부탁하거나, 중개인이 보증의무는 두 달 뒤 없어진다고 유인하거나, 보증계약서는 원래 중개인이 작성한다고 속이는 등 기망행위가 있었음. 과도한 추심행위 사례도 있음
신청인 과실	신청인은 전화로 보증에 동의한 것 이외에 특별한 과실이 없음
신청인 여건	변제능력 부족 등 여건이 어려운 상황

Ⅲ 분쟁조정 결과 유형

Ⅲ-2. 연대보증계약 관련 분쟁조정 사례

다. 보증인책임 상당부분 면제 (신청인 책임 : 20%)

□ [사례 6] 신청인('83년생,男)은 대부업자와 전화통화시 연대보증에 동의하였으나 자필서명이 없는 점, 채무자와 중개인의 기망행위, 채권자 부주의 등을 감안하여 보증인 부담을 80% 면제 결정(원채무액 4,500만원)

○(신청인) 직장상사인 주채무자와 중개인이 유효한 보증이 아니라고 속이면서 연대보증 입보를 요청하였고, 신청인은 채권자의 전화녹취에 응하여 자필서명 의사를 사실과 다르게 거짓 시인하였음.

○(대부업자) 신청인의 보증계약서 등 신청서류상 자필서명이 상호 일치하지 않음에도 대부업자는 이를 전화통화로만 확인했을 뿐 연대보증과 자필서명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

□ [사례 5] 신청인('65년생,女)은 고객 요청으로 연대보증 입보에 동의하였으나 자필서명이 없는 점, 중개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보증인 부담을 80% 면제 결정(원채무액 2,000만원)

○(신청인) 주요 고객이 연대보증 입보를 요청하였고, 중개인이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졌다고 기망하여 연대보증에 동의하였으나, 자필서명은 하지 않았음. 신청인은 다중채무에 연루되어 보증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상황

○(대부업자) 신청인의 보증계약서상 자필서명 여부를 보증인과 전화통화 방법으로만 확인했을 뿐 자필서명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

Ⅲ 분쟁조정 결과 유형

Ⅲ-2. 연대보증계약 관련 분쟁조정 사례

라. 보증인책임 상당부분 면제 (신청인 책임 : 30%)

신청인 과실비율 30% 사례 분석

구분	대표 사례(예시)
자필서명	대부분 없음 (보증계약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 다만, 자필서명을 했음에도 30%로 결정한 사례가 1건 있음
신청인 유선동의	전화로 연대보증에 동의한다고 답변
채권자 과실	전화통화 이외에 보증인 본인확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
채무자, 중개인의 기망행위 등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는 등 기망행위가 있는 사례가 많음
신청인 과실	연대보증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에도 전화로 동의한 사례가 많음
신청인 여건	대부분 특이사항 없음

Ⅲ 분쟁조정 결과 유형

Ⅲ-2. 연대보증계약 관련 분쟁조정 사례

다. 보증인책임 상당부분 면제 (신청인 책임 : 30%)

□ [사례 9] 신청인('84년생,男)은 대부업자와 전화통화시 연대보증에 동의하였으나 자필서명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증인 부담을 70% 면제 결정(원채무액 1,700만원)

○(신청인) 신청인은 연대보증제도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었으며, 채권자의 전화녹취에 응하여 자필서명 의사를 사실과 다르게 거짓 시인하였음.

○(대부업자) 신청인의 보증계약서상 자필서명 여부를 보증인과 전화로만 확인했을 뿐 자필서명의 진정성 여부를 충실히 확인하지 않았음

□ [사례 9] 신청인('82년생,女)은 중개업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대부업자와 전화통화시 연대보증에 동의하였으나 자필서명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증인 부담을 70% 면제 결정(원채무액 500만원)

○(신청인) 중개인이 은행계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사칭하고 3개월 후에 보증이 삭제된다고 기망하면서 연대보증 입보를 유도하였고, 신청인은 채권자의 전화녹취에 응하여 자필서명 의사를 사실과 다르게 거짓 시인하였음.

○(대부업자) 신청인의 보증계약서상 자필서명 여부를 보증인과 전화로만 확인했을 뿐 자필서명의 진정성 여부를 충실히 확인하지 않았음

Ⅲ 분쟁조정 결과 유형

Ⅲ-2. 연대보증계약 관련 분쟁조정 사례

다. 보증인책임 상당부분 면제 (신청인 책임 : 30%)

□ [사례 10] 신청인(72년생,男)은 연대보증에 동의하고 계약서에 자필서명했으나, 중개인의 기망행위, 대부업자의 과잉대부행위 등을 감안하여 보증인 부담을 70% 면제 결정(원채무액 500만원)

○(신청인) 중개인이 3개월 후에 보증이 삭제된다고 기망하면서 연대보증 입보를 유도하였고, 신청인은 채권자의 전화녹취에 응하고 자필서명을 하였음

○(대부업자) 주채무자에 대한 대부금액이 이미 과도한 상태임에도 자격심사를 게을리 하여 대출을 실행한 부주의가 있었음

□ [사례 11] 신청인(84년생,女)은 중개업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대부업자와 전화통화시 연대보증에 동의하였으나 자필서명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증인 부담을 70% 면제 결정(원채무액 1,900만원)

○(신청인) 중개인이 실제로는 보증책임이 없다고 기망하면서 연대보증 입보를 유도하였고, 신청인은 채권자의 전화녹취에 응하여 자필서명 의사를 사실과 다르게 거짓 시인하였음. 신청인이 8개월간 이자를 대위변제한 사실이 있으나 보증계약의 하자를 사후적으로 치유하는 자발적 보증채무 이행으로 보기 어려움

○(대부업자) 신청인의 보증계약서상 자필서명 여부를 보증인과 전화통화 방법으로만 확인했을 뿐 자필서명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 특히, 신청인과 주채무자의 주소지가 동일하여 대리서명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를 해태하였음

37/59

Ⅲ 분쟁조정 결과 유형

Ⅲ-2. 연대보증계약 관련 분쟁조정 사례

라. 보증인책임 상당부분 면제 (신청인 책임 : 35%)

신청인 과실비율 35% 사례 분석

구분	대표 사례(예시)
자필서명	없음 (보증계약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
신청인 유선동의	전화로 연대보증에 동의한다고 답변
채권자 과실	전화통화 이외에 보증인 본인확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
채무자, 중개인의 기망행위 등	2개월 후 저금리대출로 전환된다는 기망행위가 있었음
신청인 과실	연대보증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
신청인 여건	특이사항 없음

38/59

Ⅲ 분쟁조정 결과 유형

Ⅲ-2. 연대보증계약 관련 분쟁조정 사례

다. 보증인책임 상당부분 면제 (신청인 책임 : 35%)

□ [사례 10] 신청인(71년생,男)은 중개업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대부업자와 전화 통화시 연대보증에 동의하였으나, 자필서명이 없는 점, 신청인의 주의해태도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증인 부담을 65% 면제 결정(원채무액 1,000만원)

○(신청인) 중개인이 2개월 후 저금리대출로 전환된다고 기망하면서 연대보증 입보를 유도하였고, 신청인은 채권자의 전화녹취에 응하여 자필서명 의사를 사실과 다르게 거짓 시인하였음.

다만, 신청인의 직장경력, 사회적 지위, 법적 절차에 대한 지식 등을 고려할 때 연대보증책임의 중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계약과정에서 주의의무 해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인정됨

○(대부업자) 신청인의 보증계약서상 자필서명 여부를 보증인과 전화통화 방법으로만 확인했을 뿐 자필서명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

Ⅲ 분쟁조정 결과 유형

Ⅲ-2. 연대보증계약 관련 분쟁조정 사례

라. 보증인책임 일부 면제 (신청인 책임 : 50%)

신청인 과실비율 50% 사례 분석

구분	대표 사례(예시)
자필서명	없음 (보증계약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
신청인 유선동의	전화로 연대보증에 동의한다고 답변
채권자 과실	전화통화 이외에 보증인 본인확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
채무자, 중개인의 기망행위 등	연대보증이 아니라 '입금동의'라고 기망하고 계약서는 중개인이 작성하는 것이라고 설명
신청인 과실	연대보증 제도, 자필서명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
신청인 여건	특이사항 없음

□ [사례 13] 신청인(78년생,男)은 중개업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대부업자와 전화 통화시 연대보증에 동의하였으나, 자필서명이 없는 점, 신청인의 주의해태가 상당히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증인 부담을 50% 면제 결정(원채무액 1,200만원)

○(신청인) 중개인이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었다고 연대보증 입보를 유도하였고, 신청인은 채권자의 전화녹취에 응하여 자필서명 의사를 사실과 다르게 거짓 시인하였음. 다만, 신청인이 보험설계사로서 보증책임과 자필서명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대부업자와 전화도중 연대보증계약임이 명확히 드러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의의무 해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인정됨

○(대부업자) 신청인의 보증계약서상 자필서명 여부를 보증인과 전화통화 방법으로만 확인했을 뿐 자필서명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

Ⅲ 분쟁조정 결과 유형

Ⅲ-3. 중개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사례

- ❖ 중개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부업자 손해배상책임 분쟁 1건이 있었으며,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금액을 결정
 - ▶ 채권자 과실 : 대부업자가 중개업자 관리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
 - ▶ 중개인의 불법행위 : 중개인 불법행위의 심각성
 - ▶ 채무자 과실 : 채무자가 중개인의 불법행위를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여부
 - ▶ 손해배상금액 : 손해배상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사례 14] 대부중개업자가 신청인에게 허위로 약속한 이자율(10.2%)과 대부업자가 신청인에게 실제로 적용한 이자율(39.0%)의 차이에 해당하는 이자납부 금액을 대부업자가 신청인에게 상환하도록 결정

$$\begin{aligned} \text{※ 상환금액} &= \text{대출기간중 실제 납부한 이자금액} - \text{허위로 약속한 이자금액} \\ &= \text{대출원금} \times \text{이자율 차이}(39.0\% - 10.2\%) \times (\text{대출일수}/365) \end{aligned}$$

○(신청인) 대부중개업자가 1주일내에 저금리(10.2%)대출로 전환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고금리(39%)대출을 받았고, 약속과 달리 저금리 전환이 안되자 대출원리금을 만기전 전액 상환하였음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의 기망행위(저금리 갈아타기 약속 등)가 만연한 점을 알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한 책임이 인정됨. 기망행위를 한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업자와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한 '상위' 중개업자가 아니라 상위중개업자의 재위탁업체('하위' 중개업자)였으나, 하위중개업자라도 관리·감독책임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

☞ 분쟁조정결정서 내용은 【별첨】 참조

[별첨]

대부업분쟁조정결정서 모음

대부업분쟁조정결정서	
① 조정번호	2014-
② 조정일자	2014. 2. 5.(수)
③ 사건명	보증채무부존재확인 등 조정신청사건
당사자	④ 신청인 ⑤ 피신청인
⑥ 조정내용	신청인이 보증한도 내에서 잔존채무의 20%를 피신청인에게 상환할 것을 약정하고 피신청인은 나머지 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할 것을 권고함(일부인용)
⑦ 수락권고기간	조정결정서 통지도달일로부터 20일
⑧ 신청 취지	자필서명 않은 보증계약의 무효확인 등 조정을 신청함
⑨ 이유	본건 제출자료와 당사자를 조사한 결과 보증계약서에 직접 자필로 서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음. 상기 조정내용(일부인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 근거함. 우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보증계약서상 자필서명 여부를 보증인과 전화통화 방법으로만 확인했을 뿐 자필서명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인정됨. 한편 신청인은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녹취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중개업자에게 속아 '연대보증' 여부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선뜻 피신청인의 전화상담에 응하여 자필서명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거짓 시인한 점이 인정됨. 그 밖에 관련법률의 취지, 제반 사실관계,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과 항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책임을 위와 같이 잔존채무의 20%로 산정함.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결정을 하고 수락을 권고한다.	
2014년 2월 5일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대부업분쟁조정결정서	
① 조정번호	2014-
② 조정일자	2014. 2. 5.(수)
③ 사건명	보증채무부존재확인 등 조정신청사건
당사자	④ 신청인 ⑤ 피신청인
⑥ 조정내용	신청인이 보증한도 내에서 잔존채무의 30%를 피신청인에게 상환할 것을 약정하고 피신청인은 나머지 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할 것을 권고함(일부인용)
⑦ 수락권고기간	조정결정서 통지도달일로부터 20일
⑧ 신청 취지	자필서명 않은 보증계약의 무효확인 등 조정을 신청함
⑨ 이유	본건 제출자료와 당사자를 조사한 결과 보증계약서에 직접 자필로 서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음. 상기 조정내용(일부인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 근거함. 우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보증계약서상 자필서명 여부를 보증인과 전화통화 방법으로만 확인했을 뿐 자필서명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인정됨. 한편 6인이나 일보하인시도 '보증'계약인 줄 몰랐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믿기가 어려우며, 중개업자의 말만 듣고 선뜻 피신청인의 전화상담에 응하여 자필서명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거짓 시인한 점이 인정됨. 그 밖에 관련법률의 취지, 제반 사실관계,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과 항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책임을 위와 같이 잔존채무의 30%로 산정함.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결정을 하고 수락을 권고한다.	
2014년 2월 5일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별첨]

대부업분쟁조정결정서 모음

대부업분쟁조정결정서	
① 조정번호	2014 -
② 조정일자	2014. 2. 24.(월)
③ 사건명	보증채무부존재확인 등 조정신청사건
당사자	④ 신청인
	⑤ 피신청인
⑥ 조정내용	신청인이 보증한도 내에서 잔존채무의 20%를 피신청인에게 상환할 것을 약정하고 피신청인은 나머지 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할 것을 권고함(일부인용)
⑦ 수락연고기간	조정결정서 통지도달일로부터 20일
⑧ 신청 취지	자필서명 많은 보증계약의 무효확인 등 조정을 신청함
⑨ 이 유	본건 제출자료와 당사자를 조사한 결과 보증계약서에 직접 자필로 서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음. 상기 조정내용(일부인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 근거함. 우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보증계약상 자필서명 여부를 보증인과 전화통화 방법으로만 확인했을 뿐 자필서명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보증계약을 체결한 시점도 보증계약서 및 주채무자와 거대한 대부계약서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한편, 신청인은 같은 피사에 근무하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녹취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연대보증' 여부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신청 피신청인의 전화상담에 응하여 자필서명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거짓 시인한 점이 인정됨. 그 밖에 관련법률의 취지, 제반 사실관계,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과 항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책임을 위와 같이 잔존채무의 20%로 산정함.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결정을 하고 수락을 권고한다. 2014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대부업분쟁조정결정서	
① 조정번호	2014 -
② 조정일자	2014. 2. 24.(월)
③ 사건명	보증채무부존재확인 등 조정신청사건
당사자	④ 신청인
	⑤ 피신청인
⑥ 조정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잔존채무 전부를 면책 하여 줄 것을 권고함(전부인용)
⑦ 수락연고기간	조정결정서 통지도달일로부터 20일
⑧ 신청 취지	자필서명 많은 보증계약의 무효확인 등 조정을 신청함
⑨ 이 유	본건 제출자료와 당사자를 조사한 결과 보증계약서에 직접 자필로 서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음. 상기 조정내용(전부인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 근거함. 우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보증계약상 자필서명 여부를 보증인과 전화통화 방법으로만 확인했을 뿐 자필서명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보증계약을 체결한 시점도 보증계약서 및 주채무자와 거대한 대부계약서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한편 신청인은 직위를 이용한 직장 상사의 부탁된 연대보증 요청을 거절 못하고 신청 피신청인의 전화 상담에 응하여 자필서명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거짓 시인한 점이 인정됨. 그러나 신청인은 주채무자의 사기행위의 피해자로, 당해 사건 외에도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과도한 다중채무에 연루되어 피해가 크다는 점, 그 밖에 관련법률의 취지, 제반 사실관계,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과 항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보증 채무 전부를 면책하여 줄 것을 요청함.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결정을 하고 수락을 권고한다. 2014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별첨]

대부업분쟁조정결정서 모음

대부업분쟁조정결정서	
① 조정번호	2014 -
② 조정일자	2014. 3. 28.(금)
③ 사건명	보증채무부존재확인 등 조정신청사건
당사자	④ 신청인
	⑤ 피신청인
⑥ 조정내용	신청인이 보증한도 내에서 잔존채무의 30%를 피신청인에게 상환할 것을 약정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보증채무를 면하여 줄 것을 권고함(일부인용)
⑦ 수락연고기간	조정결정서 통지도달일로부터 20일
⑧ 신청 취지	자필서명 많은 보증계약의 무효확인 등 조정을 신청함
⑨ 이 유	본건 제출자료와 당사자를 조사한 결과 보증계약서에 직접 자필로 서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음. 상기 조정내용(일부인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 근거함. 우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보증계약상 자필서명 여부를 보증인과 전화통화 방법으로만 확인했을 뿐 자필서명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한편, 신청인은 녹취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었던 대부업업자의 말에 속아 '연대보증' 여부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신청 피신청인의 전화상담에 응하여 자필서명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거짓 시인한 점이 인정됨. 그 밖에 관련법률의 취지, 제반 사실관계,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과 항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책임을 위와 같이 잔존채무의 30%로 산정함.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결정을 하고 수락을 권고한다. 2014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대부업분쟁조정결정서	
① 조정번호	2014 -
② 조정일자	2014. 3. 28.(금)
③ 사건명	보증채무부존재확인 등 조정신청사건
당사자	④ 신청인
	⑤ 피신청인
⑥ 조정내용	신청인이 보증한도 내에서 잔존채무의 20%를 피신청인에게 상환할 것을 약정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보증채무를 면하여 줄 것을 권고함(일부인용)
⑦ 수락연고기간	조정결정서 통지도달일로부터 20일
⑧ 신청 취지	자필서명 많은 보증계약의 무효확인 등 조정을 신청함
⑨ 이 유	본건 제출자료와 당사자를 조사한 결과 보증계약서에 직접 자필로 서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음. 상기 조정내용(일부인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 근거함. 우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보증계약상 자필서명 여부를 보증인과 전화통화 방법으로만 확인했을 뿐 자필서명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한편, 신청인은 자신의 고객이자 직장상사인 주채무자의 지속적인 요청을 거절 못하고 신청 피신청인의 전화상담에 응하여 자필서명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거짓 시인한 점이 인정됨. 그러나 연대보증 외에도 다중채무에 연루 되어 개인회생·과산 위기에 처해있는 신청인의 현실적인 채무상환 능력, 관련법률의 취지, 제반 사실관계,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과 항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책임을 위와 같이 잔존 채무의 20%로 산정함.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결정을 하고 수락을 권고한다. 2014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별첨]

대부업분쟁조정결정서 모음

대부업분쟁조정결정서	
① 조정번호	2014 -
② 조정일자	2014. 4. 24.(목)
③ 사건명	보증채무부존재확인 등 조정신청사건
당사자	④ 신청인
	⑤ 피신청인
⑥ 조정내용	신청인이 보증한도 내에서 잔존채무의 40%를 피신청인에게 상환할 것을 약정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보증채무를 면제하여 줄 것을 권고함(일부인용)
⑦ 수탁권고기간	조정결정서 통지도달일로부터 20일
⑧ 신청 취지	자필서명 많은 보증계약의 무효확인 등 조정을 신청함
⑨ 이 유	본건 제출자료와 당사자를 조사한 결과 보증계약서에 직접 자필로 서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음. 상기 조정내용(일부인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 근거함. 우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보증계약서상 자필서명 여부를 보증인과 전화통화 방법으로만 확인했을 뿐 자필서명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인정됨. 한편, 신청인은 녹취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전화상담에 의하여 자필서명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거짓 시인한 점이 인정됨. 그 밖에 관련법률의 취지, 제반 사실관계,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과 항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책임을 위와 같이 잔존채무의 40%로 산정함.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결정을 하고 수탁을 권고한다.	
2014년 4월 24일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대부업분쟁조정결정서	
① 조정번호	2014 -
② 조정일자	2014. 6. 26.(목)
③ 사건명	보증채무부존재확인 등 조정신청사건
당사자	④ 신청인
	⑤ 피신청인
⑥ 조정내용	신청인이 보증한도 내에서 잔존채무의 30%를 피신청인에게 상환할 것을 약정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보증채무를 면하여 줄 것을 권고함(일부인용)
⑦ 수탁권고기간	조정결정서 통지도달일로부터 20일
⑧ 신청 취지	자필서명 많은 보증계약의 무효확인 등 조정을 신청함
⑨ 이 유	본건 제출자료와 당사자를 조사한 결과 보증계약서에 직접 자필로 서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음. 상기 조정내용(일부인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 근거함. 우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보증계약서상 자필서명 여부를 보증인과 전화통화 방법으로만 확인했을 뿐 자필서명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인정됨. 한편, 신청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피신청인의 부채를 기꺼워하지 못하고 녹취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신청인 신용보증인이 되는 것이니 확인전화에 응정하였지만 답변하라는 중개업자의 말이 속아 '연대보증' 여부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진술 피신청인의 전화상담에 의하여 자필서명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거짓 시인한 점이 인정됨. 그 밖에 관련법률의 취지, 제반 사실관계,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과 항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책임을 위와 같이 잔존채무의 30%로 산정함.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결정을 하고 수탁을 권고한다.	
2014년 6월 26일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45/59

[별첨]

대부업분쟁조정결정서 모음

대부업분쟁조정결정서	
① 조정번호	2014 -
② 조정일자	2014. 6. 26.(목)
③ 사건명	보증채무부존재확인 등 조정신청사건
당사자	④ 신청인
	⑤ 피신청인
⑥ 조정내용	신청인이 보증한도 내에서 잔존채무의 30%를 피신청인에게 상환할 것을 약정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보증채무를 면하여 줄 것을 권고함(일부인용)
⑦ 수탁권고기간	조정결정서 통지도달일로부터 20일
⑧ 신청 취지	자필서명 많은 보증계약의 무효확인 등 조정을 신청함
⑨ 이 유	본건 제출자료와 당사자를 조사한 결과 보증계약서에 직접 자필로 서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음. 상기 조정내용(일부인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 근거함. 우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자필서명 여부를 보증인과 전화통화 방법으로만 확인했을 뿐 자필서명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인정됨. 한편, 신청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피신청인 고교동창이 동생의 병원비조달을 위한 도움을 부탁하자 이를 기꺼워하지 못하고 녹취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직장 근무 중에 걸려온 피신청인의 전화상담에 의하여 자필서명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거짓 시인한 부주의가 인정됨. 그 밖에 관련법률의 취지, 제반 사실관계,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과 항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책임을 위와 같이 잔존채무의 30%로 산정함.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결정을 하고 수탁을 권고한다.	
2014년 6월 26일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대부업분쟁조정결정서	
① 조정번호	2014 -
② 조정일자	2014. 6. 26.(목)
③ 사건명	보증채무부존재확인 등 조정신청사건
당사자	④ 신청인
	⑤ 피신청인
⑥ 조정내용	신청인이 보증한도 내에서 잔존채무의 30%를 피신청인에게 상환할 것을 약정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보증채무를 면하여 줄 것을 권고함(일부인용)
⑦ 수탁권고기간	조정결정서 통지도달일로부터 20일
⑧ 신청 취지	자필서명 많은 보증계약의 무효확인 등 조정을 신청함
⑨ 이 유	본건 제출자료와 당사자를 조사한 결과 보증계약서에 직접 자필로 서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음. 상기 조정내용(일부인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 근거함. 우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보증계약서상 자필서명 여부를 보증인과 전화통화 방법으로만 확인했을 뿐 자필서명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인정됨. 한편, 신청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 그 부인의 대출산용이 부족하니 참고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하자 이를 기꺼워하지 못하고, 녹취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연대보증' 여부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진술 피신청인의 전화상담에 의하여 자필서명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거짓 시인한 점이 인정됨. 그 밖에 관련법률의 취지, 제반 사실관계,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과 항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책임을 위와 같이 잔존채무의 30%로 산정함.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결정을 하고 수탁을 권고한다.	
2014년 6월 26일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46/59

[별첨]

대부업분쟁조정결정서 모음

대부업분쟁조정결정서	
① 조정번호	2014 -
② 조정일자	2014. 6. 26.(목)
③ 사건명	보증채무부존재확인 등 조정신청사건
당사자	④ 신청인
	⑤ 피신청인
⑥ 조정내용	신청인이 보증한다 내에서 잔존채무의 30%를 피신청인에게 상환할 것을 약정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보증채무를 면하여 줄 것을 권고함(일부인용)
⑦ 수락권고기간	조정결정서 통지도달일로부터 20일
⑧ 신청 취지	자필서명 많은 보증계약의 무효확인 등 조정을 신청함
⑨ 이 유	본건 제출자료와 당사자를 조사한 결과 보증계약서에 직접 자필로 서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음. 상기 조정내용(일부인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근거함. 우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보증계약서상 자필서명 여부를 보증인과 전화통화 방법으로만 확인했을 뿐 자필서명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인정됨. 또한 보증계약서를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같이 근무하는 직장으로 발송하고 또 보증인이 직접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확인하지 않은 부주의도 인정됨. 한편, 신청인은(한계 장외해비인) 직장장사의 반복된 부탁을 근무여건상 기꺼워하지 못하고 녹취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와 같이 주채무자의 전모에 따라 신청 피신청인의 전화상담에 응하여 자필서명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거짓 시인한 점이 인정 됨. 또한 신청인은 주채무자의 사기 행위의 피해자로서 본인 외에도 8000여만 원에 이르는 다중채무에 연루되어 있음. 그 밖에 관련법률의 취지, 제반 사실관계,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과 항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책임은 위와 같이 잔존채무의 30%로 산정함.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결정을 하고 수락을 권고한다. 2014년 6월 26일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대부업분쟁조정결정서	
① 조정번호	2014 -
② 조정일자	2014. 7. 24.
③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등 조정 신청
당사자	④ 신청인
	⑤ 피신청인
⑥ 조정내용	신청인이 보증한다 내에서 잔존채무의 30%를 피신청인에게 상환할 것을 약정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보증채무를 면하여 줄 것을 권고함(일부인용)
⑦ 수락권고기간	조정결정서 통지도달일로부터 20일
⑧ 신청 취지	자필서명 많은 보증계약의 무효확인 등 조정을 신청함
⑨ 이 유	대부계약서, 연대보증계약서 등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보증계약서에 신청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입법목적 및 취지를 감안할 때 피신청인은 보증계약서에 자필로 서명 및 시명에 대한 진위여부를 조급한 주의 기울여도 충분히 확인가능 함에도 보증인과의 전화통화 방법으로만 확인했을 뿐임. 사실상 대부업자가 비용 등의 문제로 전화상으로도 본인서명사실 확인하는 관행은 개선 필요가 있으며 주 채무자에게 대출금이 입금되기 전에 보증인이 자필 서명한 보증계약서, 보증의사 등을 확인하고 채무자에게 송금이 이뤄지자 함에도 신청인과의 전화통화 도만 편리하게 확인하는 등 비대면 신대출 관행의 문제와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었다고 판단됨. 결론적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책임부담을 분쟁조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한 잔존채무의 30%로 권고 의결함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결정을 하고 수락을 권고한다. 2014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별첨]

대부업분쟁조정결정서 모음

대부업분쟁조정결정서	
① 조정번호	2014 -
② 조정일자	2014. 8. 22.
③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등 조정 신청
당사자	④ 신청인
	⑤ 피신청인
⑥ 조정내용	신청인이 보증한다 내에서 잔존채무의 30%를 피신청인에게 상환할 것을 약정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보증채무를 면하여 줄 것을 권고함(일부인용)
⑦ 수락권고기간	조정결정서 통지도달일로부터 20일
⑧ 신청 취지	자필서명 많은 보증계약의 무효확인 등 조정을 신청함
⑨ 이 유	본건 제출자료와 관련 당사자를 조사한 결과 보증계약서에 직접 자필로 서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음. 상기 조정내용(일부인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근거함. 우선 신청인은 주채무자(신청인의 맥부)에 대한 호의와 증인의 잘못된 설명(한 달 후면 제지되는 빈번한대보증대출에 불과) 등에 유도되어 별다른 의심없이 보증계약과 관련된 피신청인 측의 권위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사실이 인정됨.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보증계약서상 자필 서명 여부를 보증인과 전화통화 방법으로만 확인했을 뿐 자필서명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인정됨. 그 밖에 관련법률의 취지, 제반 사실관계,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과 항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책임은 분쟁조정 신청일 기준 잔존채무의 30%로 산정함.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결정을 하고 수락을 권고한다. 2014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대부업분쟁조정결정서	
① 조정번호	2014 -
② 조정일자	2014. 8. 22.
③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등 조정 신청
당사자	④ 신청인
	⑤ 피신청인
⑥ 조정내용	신청인이 보증한다 내에서 잔존채무의 30%를 피신청인에게 상환할 것을 약정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보증채무를 면하여 줄 것을 권고함(일부인용)
⑦ 수락권고기간	조정결정서 통지도달일로부터 20일
⑧ 신청 취지	자필서명 많은 보증계약의 무효확인 등 조정을 신청함
⑨ 이 유	본건 제출자료와 관련 당사자를 조사한 결과 보증계약서에 직접 자필로 서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음. 상기 조정내용(일부인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근거함. 우선 신청인은 조정신청서에서 제출하고 있는 바와 같이 '3개월 단기 신용보증'을 제공하겠다고 하였고 '보증'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지적 판단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연대보증 여부를 묻는' 전화질문에 부주의하게 진술한 사실이 인정됨.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보증계약서상 자필서명 여부를 보증인과 전화통화 방법으로만 확인했을 뿐 자필서명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인정됨. 그 밖에 관련법률의 취지, 제반 사실관계,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과 항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책임은 분쟁조정 신청일 기준 잔존채무의 30%로 산정함.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결정을 하고 수락을 권고한다. 2014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별첨]

대부업분쟁조정결정서 모음

대부업분쟁조정결정서	
① 조정번호	2014 -
② 조정일자	2014. 9. 18
③ 사건명	채무부준재확인 등 조정 신청
당사자	④ 신청인 ⑤ 피신청인
⑥ 조정내용	1. 신청이 보증한도 내에서 잔존채무의 30%를 피신청인에게 상환할 것을 약정하고 피신청인은 나머지 채무의 부준재를 확인해 줄 것을 권고함(일부인용) 2. 신청이 보증한도 내에서 잔존채무의 20%를 피신청인에게 상환할 것을 약정하고 피신청인은 나머지 채무의 부준재를 확인해 줄 것을 권고함(일부인용)
⑦ 수락연고기간	조정결정서 통지도달일로부터 20일
⑧ 신청 취지	자필서명 않은 보증계약의 무효확인 등 조정을 신청함
⑨ 이 유	1. 신청이 보증한도 내에서 잔존채무의 30%를 피신청인에게 상환할 것을 약정하고 피신청인은 나머지 채무의 부준재를 확인해 줄 것을 권고함(일부인용) 2. 신청이 보증한도 내에서 잔존채무의 20%를 피신청인에게 상환할 것을 약정하고 피신청인은 나머지 채무의 부준재를 확인해 줄 것을 권고함(일부인용) 본건 채종자료를 당사자를 조사한 결과 보증계약서에 직접 자필로 서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음. 상기 조정내용(일부인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 근거함. 우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자필서명 여부를 유선상, 즉 구두로만 확인하였을 뿐 자필서명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인정됨. 또한 무효인 보증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직장으로 전화하여 불미스러운 인사를 사용하여 신용등급 하락을 위협하는 등 과도한 추심행태가 인정됨. 한편 신청인도 바쁜 업무시간 중이던 피신청인의 전화상담에 응하여 '자필서명' 여부를, 사실과는 다르게, 거짓 시인한 점이 인정됨. 그 밖에 관련 법률의 취지, 제반 사실관계,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과 항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책임을 위와 같이 분쟁 조정 신청일 기준 잔존채무의 20%로 산정함.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세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결정을 하고 수락을 권고한다. 2014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대부업분쟁조정결정서	
① 조정번호	2014 -
② 조정일자	2014. 9. 18
③ 사건명	채무부준재확인 등 조정 신청
당사자	④ 신청인 ⑤ 피신청인
⑥ 조정내용	분위위원회에 상정된 신청인의 책임을 전부면책할 것을 권고함(전부인용)
⑦ 수락연고기간	조정결정서 통지도달일로부터 20일
⑧ 신청 취지	자필서명 않은 보증계약의 무효확인 등 조정을 신청함 본건 채종자료와 당사자를 조사한 결과 신청인을 일체의 법적책임으로부터 면책하도록 결정함. 본건 전부인용결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 근거함. 먼저 신청인은 저채장에 3급 장애인으로서 보증의 의미는 커녕 일상생활상의 거래의 의미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의 지적능력의 소유자임. 또한 신청인은 주채무자의 일박 내지 강박에 의해 본건 보증에 입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행한 법률행위는 무효임. 나아가 계약서에 자필서명한 바도 없음. ⑨ 이 유 요컨대 본건은 주채무자와 대출중개인이 공모하여 신청인의 의사능력사실을 은폐하면서 임의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계기로 대출이 실행되어 피신청인 대부업채들에게 손해 발생시킨 사건임. 피신청인은 유선상으로 보증의사를 확인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의사능력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항변하나 본건 결정에는 영향이 없음. 그 밖에 관련법률의 취지, 제반 사실관계,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과 항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책임을 분쟁 조정 신청일 기준 전부면책하기로 결정함.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세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결정을 하고 수락을 권고한다. 2014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별첨]

대부업분쟁조정결정서 모음

대부업분쟁조정결정서	
① 조정번호	2014 -
② 조정일자	2014. 10. 23.
③ 사건명	보증채무 무효확인 등 조정 신청
당사자	④ 신청인 ⑤ 피신청인
⑥ 조정내용	신청인이 원금에서 이자납입액을 공제한 잔존채무의 20%를 피신청인에게 6개월 분납하고 피신청인은 나머지 채무의 부준재를 확인해 줄 것을 권고함(일부인용)
⑦ 수락연고기간	조정결정서 통지도달일로부터 20일
⑧ 신청 취지	자필서명 않은 보증계약의 무효확인 등 조정을 신청함 본건 채종자료와 관련 당사자를 조사한 결과 보증계약서에 직접 자필로 서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음. 상기 조정내용(일부인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 근거함. 신청인은 2013년 8월경 주채무자(신청인의 회사대표)가 회사의 이익을 초월하여(회사의 손해를 끼친) 상환...') 채권인(신세 보증인)에 불행히도 호도되며 도둑맞는 오해를 회사 직원에게서 저야 거절하여 문외야 무상, 호도되며 일 보하게 됨. 하지만 제반 경정상 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실제로 피신청인이 제출한 보증계약서 등 관련 서류상의 신청인 서명도 일치하지 않음. 특히 피신청인이 보낸 보증계약서와 개인정보 주점 이용/정 보요청/정보제공 동의서상의 신청인 서명이 현재까지 불일치하는 등 서류작성 및 판리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음이 인정됨. 한편 신청인이 임의로 관한 유선상사과에서 '자필서명' 여부를, 사실과는 다르게, 거짓 시인한 점이 인정됨. 하지만 주채무자와 대출중개업자의 호도와 유인행위(주채무자를 도우주기로 했으므로 협조를 부탁하며 형식상 보증인이 라는 단어가 들어가더라도 신청인지 않아도 된다...)가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자필서명 여부를 유선상, 즉 구두로만 확인하였을 뿐 자필서명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인정됨. 그 밖에 관련법률의 취지, 제반 사실관계,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과 항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책임을 위와 같이 분쟁 조정 신청일 기준 잔존채무의 20%로 산정함.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세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결정을 하고 수락을 권고한다. 2014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대부업분쟁조정결정서	
① 조정번호	2014 -
② 조정일자	2014. 10. 23.
③ 사건명	보증채무 무효확인 등 조정 신청
당사자	④ 신청인 ⑤ 피신청인
⑥ 조정내용	신청인이 보증한도 내에서 잔존채무의 30%를 피신청인에게 상환하고 피신청인은 나머지 채무의 부준재를 확인해 줄 것을 권고함(일부인용)
⑦ 수락연고기간	조정결정서 통지도달일로부터 20일
⑧ 신청 취지	자필서명 않은 보증계약의 무효확인 등 조정을 신청함 본건 채종자료와 관련 당사자를 조사한 결과 보증계약서에 직접 자필로 서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음. 상기 조정내용(일부인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 근거함. 우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자필서명 여부를 유선상, 즉 구두로만 확인하였을 뿐 자필서명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인정됨. 신청인도 회사대표의 부탁에 무 상, 호도되며 임의하였지만 피신청인의 유선상사에 의하여 '자필서명' 여부를, 사실과는 다르게, 거짓 시인한 점이 인정됨. 그 밖에 관련법률의 취지, 제반 사실관계,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과 항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책임을 분쟁 조정 신청일 기준 잔존채무의 30%로 산정함.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세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결정을 하고 수락을 권고한다. 2014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별첨]

대부업분쟁조정결정서 모음

대부업분쟁조정결정서	
① 조정번호	2014 -
② 조정일자	2014. 10. 23.
③ 사건명	보증채무 무효확인 등 조정 신청
당사자	④ 신청인
	⑤ 피신청인
⑥ 조정내용	신청인이 원금의 10%를 피신청인에게 6개월 분납하고 피신청인은 나머지 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해 줄 것을 권고함(일부인용)
⑦ 수락권고기간	조정결정서 통지도달일로부터 20일
⑧ 신청 취지	자필서명 않은 보증계약의 무효확인 등 조정을 신청함
⑨ 이 유	본건 제출자료와 관련 당사자를 조사한 결과 보증계약서에 직접 자필로 서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음. 상기 조정내용(일부인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 근거함. 우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자필서명 여부를 유선상, 즉 구두로만 확인하였을 뿐 자필서명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인정됨. 또한 무효인 보증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채권의 양도인(원채권자)은 신청인의 직장으로 전화하여 막달 불이비서문 연사를 사용한 과도한 추심행태가 인정됨. 한편 신청인도 피신청인의 유선상사에 의하여 '자필서명'여부를, 사실과는 다르게, 거짓 시인한 점이 인정됨. 신청인이 지인(주채무자)의 기말(주자기형의)에 속아 무상, 호의로 임보한 점, 최근 6년 만에 개인의 생에서 벗어난 사실과 건강상태 및 타 대부업체에 대한 변제상환 등 채무능력 능력과 관련된 경황을 참조함. 그 밖에 관련법률의 취지, 제반 사실관계,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과 항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책임을 분쟁조정 신청일 기준 원금의 10%(6개월 분납)로 산정함.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결정을 하고 수락을 권고한다.	
2014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대부업분쟁조정결정서	
① 조정번호	2014 -
② 조정일자	2014.11.20.
③ 사건명	보증채무 무효확인 등 조정 신청
당사자	④ 신청인
	⑤ 피신청인
⑥ 조정내용	신청인이 원금에서 이자남입액을 공제한 잔존채무의 30%를 피신청인에게 납부하고 피신청인은 나머지 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해 줄 것을 권고함(일부인용)
⑦ 수락권고기간	조정결정서 통지도달일로부터 20일
⑧ 신청 취지	자필서명 않은 보증계약의 무효확인 등 조정을 신청함
⑨ 이 유	본건 제출자료와 관련 당사자를 조사한 결과 보증계약서에 직접 자필로 서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음. 상기 조정내용(일부인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 근거함. 주채무자는 과거 신청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한 이웃지인이었으며, 무효로도 서로 아는 사이였다고 함. 주채무자는 신청인에게 상동권 구내대금을 갚는다는 명분하에 필요하게 보증을 부탁하였고 신청인은 이를 통해 거절하지 못해 무상, 호의로 임보한 것으로 보임. 한편 신청인이 임보에 관한 유선상사과정에 '자필서명'여부를, 사실과는 다르게, 거짓 시인한 점이 인정됨. 하지만 신청인은 계약서 등을 본 적도 없고 자필서명할 적도 없다고 주장하며 계약서 서명이 신청인 서명이라는 명백한 증거(필적감정 등)도 없음. 나아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자필서명 여부를 유선상, 즉 구두로만 확인하였을 뿐 자필서명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인정됨. 또한 신청인의 현재 경제적 상황(남편 식당운영)과 변제 능력 등을 참조함. 그 밖에 관련법률의 취지, 제반 사실관계,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과 항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책임을 분쟁조정 신청일 기준 원금에서 이자남입액을 공제한 잔존 채무의 30%로 산정함.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세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결정을 하고 수락을 권고한다.	
2014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51/59

[별첨]

대부업분쟁조정결정서 모음

대부업분쟁조정결정서	
① 조정번호	2014 -
② 조정일자	2014.11.20.
③ 사건명	보증채무 무효확인 등 조정 신청
당사자	④ 신청인
	⑤ 피신청인
⑥ 조정내용	신청인이 보증한도 내에서 잔존채무의 20%를 피신청인에게 12개월 분할납부하여 상환하고 피신청인은 나머지 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해 줄 것을 권고함(일부인용)
⑦ 수락권고기간	조정결정서 통지도달일로부터 20일
⑧ 신청 취지	자필서명 않은 보증계약의 무효확인 등 조정을 신청함
⑨ 이 유	본건 제출자료와 관련 당사자를 조사한 결과 보증계약서에 직접 자필로 서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음. 상기 조정내용(일부인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 근거함. 우선 7천 만 원이라는 거액의 보증대출계약이 이루어지는데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자필서명 여부를 유선상, 즉 구두로만 확인하였을 뿐 자필서명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인정됨. 또한 보증계약서를 주채무자 김모, 송부하여 보증인이 서명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음. 나아가 피신청인은 관련 서류의 관리에 필요한 주의할 충분한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신청인도 회사통표의 부락에 무상, 호의로 임보하였지만 피신청인의 유선상사에 의하여 '자필서명'여부를, 사실과는 다르게, 거짓 시인한 점이 인정됨. 그 밖에 관련법률의 취지, 제반 사실관계,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과 항변, 신청인의 상환(월150만원 수입, 남편직업, 학생 자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책임을 분쟁조정 신청일 기준 잔존채무의 20%로 산정하고 피신청인에게 12개월 분할납부할 것을 권고함.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결정을 하고 수락을 권고한다.	
2014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대부업분쟁조정결정서	
① 조정번호	2014 -
② 조정일자	2014.12.18.
③ 사건명	보증채무 무효확인 등 조정 신청
당사자	④ 신청인
	⑤ 피신청인
⑥ 조정내용	신청인이 원금에서 이자남입액을 공제한 잔존채무의 30%를 피신청인에게 납부하고 피신청인은 나머지 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해 줄 것을 권고함(일부인용)
⑦ 수락권고기간	조정결정서 통지도달일로부터 20일
⑧ 신청 취지	자필서명 않은 보증계약의 무효확인 등 조정을 신청함
⑨ 이 유	본건 제출자료와 관련 당사자를 조사한 결과 보증계약서에 직접 자필로 서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음. 상기 조정내용(일부인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 근거함. 주채무자는 과거 신청인과 약 10년간 함께 근무했던 부하직원으로서 신청인에게 단기보증을 빌리도록 보증을 부탁하여, 신청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해 무상, 호의로 보증을 임한 것으로 보임. 한편 신청인이 임보에 관한 유선상사과정에 '자필서명'여부를, 사실과는 다르게, 거짓 시인한 점이 인정됨. 하지만 신청인은 계약서 등을 본 적도 없고 자필서명할 적도 없다고 주장하며 계약서 서명이 신청인 서명이라는 명백한 증거(필적감정 등)도 없음.(직장동료인 주채무자가 대신 수령하여 대리서명했다고 함.)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자필서명 여부를 유선상, 즉 구두로만 확인하였을 뿐 자필서명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인정됨. 그 밖에 신청인의 현재 재무상황(수입 3천 만 원 보증채무)과 변제능력 등을 참조함. 그 밖에 관련법률의 취지, 제반 사실관계,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과 항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책임을 분쟁조정 신청일 기준 원금에서 이자남입액을 공제한 잔존 채무의 30%로 산정함.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결정을 하고 수락을 권고한다.	
2014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52/59

[별첨]

대부업분쟁조정결정서 모음

대부업분쟁조정결정서	
① 조정번호	2014 -
② 조정일자	2014.12.18.
③ 사건명	보증채무 무효확인 등 조정 신청
당사자	④ 신청인 ⑤ 피신청인
⑥ 조정내용	신청인이 원금에서 이자남입액을 공제한 잔존채무의 35%를 피신청인에게 납부하고 피신청인은 나머지 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해 줄 것을 권고함(일부인용)
⑦ 수락권고기간	조정결정서 통지도달일로부터 20일
⑧ 신청 취지	자필서명 않은 보증계약의 무효확인 등 조정을 신청함
⑨ 이 유	본건 채권자료와 관련 당사자를 조사한 결과 보증계약서에 직접 자필로 서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음. 상기 조정내용(일부인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 근거함. 우채무자는 신청인의 직장동료로서 신청인에게 담기보증을 빌미로 보증을 부탁하였고 중개인도 2개월 후인 지금도 대환대출로 전환되어 보증에서 벗어난다고 호도하여 이에 입보한 것으로 보임. 한편 신청인이 입보에 관한 유선심사과정에서 '자필서명'이부분, 사실과는 다르게, 거짓 시인한 점이 인정됨. 하지만 신청인은 계약서 등을 본 적도 없고 자필서명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며 계약서 서명이 신청인 서명이라는 명백한 증거(필적감정 등)도 있음(직장동료인 주채무자가 대신 수필하여 대리서명했다고 함).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자필서명 여부를 유선상, 즉 구두로만 확인하였을 뿐 자필서명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인정됨. 다만 신청인의 연월(사회경력이 많은 40대 중반), 사회적 지위(유수 건설회사 판매팀), 지급결정 등 법적 절차에 대한 대응방식을 고려 할 때 보증책임의 중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또한 신청인의 주의를무 해태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므로 5%의 가중책임을 묻고자 함. 그 밖에 관련법률의 취지, 제반 사실관계,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과 항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책임을 분쟁조정 신청일 기준 원금에서 이자남입액을 공제한 잔존 채무의 35%로 한정함.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결정을 하고 수락을 권고한다. 2014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대부업분쟁조정결정서	
① 조정번호	2015 -
② 조정일자	2015.2.27.
③ 사건명	보증채무 무효확인 등 조정 신청
당사자	④ 신청인 ⑤ 피신청인
⑥ 조정내용	신청인이 원금에서 이자남입액을 공제한 잔존채무의 30%를 피신청인에게 납부하고 피신청인은 나머지 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해 줄 것을 권고함(일부인용)
⑦ 수락권고기간	조정결정서 통지도달일로부터 20일
⑧ 신청 취지	자필서명 않은 보증계약의 무효확인 등 조정을 신청함
⑨ 이 유	본건 채권자료와 관련 당사자를 조사 및 심의한 결과 보증계약서에 직접 자필로 서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음. 상기 조정내용(일부인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 근거함. 우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자필서명 여부를 유선상, 즉 구두로만 확인하였을 뿐 자필서명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인정됨. 신청인도 회사 동료의 부탁에 무상, 호의로 입보하였지만 피신청인의 유선심사에 의하여 '자필서명'이부분, 사실과는 다르게 거짓 시인한 점이 인정됨. 그 밖에 관련법률의 취지, 제반 사실관계,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과 항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책임을 분쟁조정 신청일 기준 잔존채무의 30%로 한정함.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결정을 하고 수락을 권고한다. 2015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별첨]

대부업분쟁조정결정서 모음

대부업분쟁조정결정서	
① 조정번호	2014 -
② 조정일자	2014.12.18.
③ 사건명	보증채무 무효확인 등 조정 신청
당사자	④ 신청인 ⑤ 피신청인
⑥ 조정내용	신청인이 원금에서 이자남입액을 공제한 잔존채무의 35%를 피신청인에게 납부하고 피신청인은 나머지 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해 줄 것을 권고함(일부인용)
⑦ 수락권고기간	조정결정서 통지도달일로부터 20일
⑧ 신청 취지	자필서명 않은 보증계약의 무효확인 등 조정을 신청함
⑨ 이 유	본건 채권자료와 관련 당사자를 조사한 결과 보증계약서에 직접 자필로 서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음. 상기 조정내용(일부인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 근거함. 우채무자는 신청인의 직장동료로서 신청인에게 담기보증을 빌미로 보증을 부탁하였고 중개인도 2개월 후인 지금도 대환대출로 전환되어 보증에서 벗어난다고 호도하여 이에 입보한 것으로 보임. 한편 신청인이 입보에 관한 유선심사과정에서 '자필서명'이부분, 사실과는 다르게, 거짓 시인한 점이 인정됨. 하지만 신청인은 계약서 등을 본 적도 없고 자필서명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며 계약서 서명이 신청인 서명이라는 명백한 증거(필적감정 등)도 있음(직장동료인 주채무자가 대신 수필하여 대리서명했다고 함).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자필서명 여부를 유선상, 즉 구두로만 확인하였을 뿐 자필서명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인정됨. 다만 신청인의 연월(사회경력이 많은 40대 중반), 사회적 지위(유수 건설회사 판매팀), 지급결정 등 법적 절차에 대한 대응방식을 고려 할 때 보증책임의 중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또한 신청인의 주의를무 해태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므로 5%의 가중책임을 묻고자 함. 그 밖에 관련법률의 취지, 제반 사실관계,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과 항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책임을 분쟁조정 신청일 기준 원금에서 이자남입액을 공제한 잔존 채무의 35%로 한정함.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결정을 하고 수락을 권고한다. 2014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대부업분쟁조정결정서	
① 조정번호	2015 -
② 조정일자	2015.2.27.
③ 사건명	보증채무 무효확인 등 조정 신청
당사자	④ 신청인 ⑤ 피신청인
⑥ 조정내용	신청인이 원금에서 이자남입액을 공제한 잔존채무의 30%를 피신청인에게 납부하고 피신청인은 나머지 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해 줄 것을 권고함(일부인용)
⑦ 수락권고기간	조정결정서 통지도달일로부터 20일
⑧ 신청 취지	자필서명 않은 보증계약의 무효확인 등 조정을 신청함
⑨ 이 유	본건 채권자료와 관련 당사자를 조사 및 심의한 결과 보증계약서에 직접 자필로 서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음. 상기 조정내용(일부인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 근거함. 우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자필서명 여부를 유선상, 즉 구두로만 확인하였을 뿐 자필서명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인정됨. 신청인도 회사 동료의 부탁에 무상, 호의로 입보하였지만 피신청인의 유선심사에 의하여 '자필서명'이부분, 사실과는 다르게 거짓 시인한 점이 인정됨. 그 밖에 관련법률의 취지, 제반 사실관계,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과 항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책임을 분쟁조정 신청일 기준 잔존채무의 30%로 한정함.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결정을 하고 수락을 권고한다. 2015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별첨]

대부업분쟁조정결정서 모음

대부업분쟁조정결정서	
① 조정번호	2015 -
② 조정일자	2015.3.20.
③ 사건명	보증채무 무효확인 등 조정 신청
당사자	④ 신청인
	⑤ 피신청인
⑥ 조정내용	신청인이 원금에서 이자납입액을 공제한 잔존채무의 30%를 피신청인에게 납부하고 피신청인은 나머지 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해 줄 것을 권고함(일부인용)
⑦ 수락권고기간	조정결정서 통지도달일로부터 20일
⑧ 신청 취지	자필서명 않은 보증계약의 무효확인 등 조정을 신청함
⑨ 이 유	본건 제출자료와 관련 당사자를 조사 및 심의한 결과 보증계약서에 직접 자필로 서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음. 상기 조정내용(일부인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 근거함.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자필서명 여부를 유심상, 즉 구두로만 확인하였을 뿐 자필서명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인정됨. 신청인도 자필서명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보증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지만 전 직장 동료의 부탁에 못 이겨 무상, 호의로 일보함을 인지하면서도 피신청인의 유심심사에 의하여 '자필서명'여 부를 사실과는 다르게 거짓 시인한 과실이 인정됨. 그 밖에 관련법률의 취지, 제반 사실관계,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과 항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책임을 분쟁 조정 신청일 기준 잔존채무의 30%로 산정함.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결정을 하고 수락을 권고한다. 2015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대부업분쟁조정결정서	
① 조정번호	2015-
② 조정일자	2015.3.20.
③ 사건명	보증채무 무효확인 등 조정 신청
당사자	④ 신청인
	⑤ 피신청인
⑥ 조정내용	신청인이 보증한도 내에서 잔존채무의 20%를 피신청인에게 12개월 분할납부하여 상환하고 피신청인은 나머지 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해 줄 것을 권고함(일부인용)
⑦ 수락권고기간	조정결정서 통지도달일로부터 20일
⑧ 신청 취지	자필서명 않은 보증계약의 무효확인 등 조정을 신청함
⑨ 이 유	본 건 제출자료와 관련 당사자를 조사한 결과 보증계약서에 직접 자필로 서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음. 상기 조정내용(일부인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 근거함. 주채무자는 신청인의 지인으로 피신청인에게 전 및을 왔는다는 명분하여 일보함을 유인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중국교출신으로 언대보증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 보증을 선 것으로 보임. 계약서도 1건을 제외하고는 자필서명한 적 없다는 것으로 판단되어 여러 개에서 사명이 신청인 외 사명이라는 명백한 증거(필리검정 등)도 없음. 다만 신청인은 한국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에 거주한 기간이 10년 정도 지났고 남편과 태부임제(거진)를 맺어가 상담을 받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일보에 관한 유산신사과정에서 '자필서명'여부를 사실과는 다르게, 거짓 시인한 과실이 인정됨.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자필서명 여부를 유심상, 즉 구두로만 확인하였을 뿐 자필서명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인정됨. 그 밖에 관련법률의 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과 항변, 신청인의 사정(무직, 건강상태 등)과 빈제능력의 현저한 부족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책임을 분쟁조정 신청일 기준 잔존채무의 20%로 조정하고 피신청인에게 12개월 분할납부할 것을 권고함.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결정을 하고 수락을 권고한다. 2015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55/59

[별첨]

대부업분쟁조정결정서 모음

대부업분쟁조정결정서	
① 조정번호	2015 -
② 조정일자	2015.4.23.
③ 사건명	보증채무 무효확인 등 조정 신청
당사자	④ 신청인
	⑤ 피신청인
⑥ 조정내용	신청인이 원금에서 이자납입액을 공제한 잔존채무의 15%를 피신청인에게 납부하고 피신청인은 나머지 보증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해 줄 것을 권고함(일부인용)
⑦ 수락권고기간	조정결정서 통지도달일로부터 20일
⑧ 신청 취지	자필서명 않은 보증계약의 무효확인 등 조정을 신청함
⑨ 이 유	본건 제출자료와 관련 당사자를 조사 및 심의한 결과 보증계약서에 직접 자필로 서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음. 상기 조정내용(일부인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 근거함. 신청인은 직장동료의 부탁으로 무상 호의로 일보하였음, 청탁 장벽이 있어 대부업체와의 보증 등의 통화 시 상행원의 안내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보증 의사를 밝혔으며, 보증의 의미 또한 충분히 인계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한편, 피신청인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종료로 극단적인 신용불안상태에 있었던 사정과 동장사본 등에 비추어 볼 때 대부업법 전 다 본 여러 건의 대출이 있었던 점 등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자적심사를 게을리하여 장애를 가진 보증인만을 믿고 대출을 시행하여 부실대출을 야기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비대면 선대출계약을 시행하면서 가계에서도 있었고, 자필서명 여부 확인 노력 또한 없었던 점 등 피신청인의 계약상 작성 및 관리상 현저한 부주의가 인정됨. 그 밖에 관련 법률의 취지, 신청인의 신청지 장외의 빈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책임을 분쟁조정 신청일 기준 잔존채무의 15%로 조정함.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결정을 하고 수락을 권고한다. 2015년 4월 28일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대부업분쟁조정결정서	
① 조정번호	2015 -
② 조정일자	2015.5.27.
③ 사건명	보증채무 무효확인 등 조정 신청
당사자	④ 신청인
	⑤ 피신청인
⑥ 조정내용	신청인이 원금에서 이자납입액을 공제한 잔존채무의 20%를 24개월 분할하여 피신청인에게 납부하고 피신청인은 나머지 보증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해 줄 것을 권고함(일부인용)
⑦ 수락권고기간	조정결정서 통지도달일로부터 20일
⑧ 신청 취지	자필서명 않은 보증계약의 무효확인 등 조정을 신청함
⑨ 이 유	본건 제출자료와 관련 당사자를 조사 및 심의한 결과 보증계약서에 직접 자필로 서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음. 상기 조정내용(일부인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 근거함. 신청인은 2013년 7월경 직장상사(부사장)의 심에 유묘한 보증이 아니므로 호의로 부여하는 요청을 직원의 자재에서 차가 거절하지 못하여 무상, 호의로 일보하게 됨. 하지만 재단 정황상 관련 서무를 직접 작성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로 보증계약서 등 관련 서류상의 신청인 서명이 일치하지 않아 피신청인의 서류작성 및 관리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됨. 다른 한편, 공제회와의 기남에 피하였다고는 하나 신청인에게도 제해서 자필서명 및 유심상 30중상사 시 일보함을 일부에 대한 확인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였으며 자필서명 등 여러 부 실지에서 부주의하게 제출한 책임이 있음. 한편, 대출종류와의 기남과 유심상사가 있었던 점(내려와 및 영고인 조사를 통해 확인됨)과 대부업법상 대부업자가 사실상 경제적 이익공제이행도 고려할 때 올바른 대부업의 조성과 정학을 위해 기울여야 할 상당한 주의의무가 모두 면하지 허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에게 경쟁자로서의 면책책임을 기강하여 용조자 함. 그 밖에 관련 법률의 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과 항변, 신청인의 사정(불규칙 수입, 컷맥이 지시)과 현저히 부족한 빈제능력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책임을 분쟁조정 신청일 기준 잔존채무의 20%로 조정하고 피신청인에게 24개월 분할납부할 것을 권고함.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결정을 하고 수락을 권고한다. 2015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56/59

[별첨]

대부업분쟁조정결정서 모음

대부업분쟁조정결정서	
① 조정번호	2015 -
② 조정일자	2015.7.22.
③ 사건명	보증채무 무효확인 등 조정 신청
당사자	④ 신청인 ⑤ 피신청인
⑥ 조정내용	신청인이 잔존채무의 30%를 6개월 분할하여 피신청인에게 납부하고 피신청인은 나머지 보증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해 줄 것을 권고함(일부인용)
⑦ 수락권고기간	조정결정서 통지도달일로부터 20일
⑧ 신청 취지	자필서명 않은 보증계약의 무효확인 등 조정을 신청함
⑨ 이 유	본건 제출자료와 관련 당사자를 조사 및 심리한 결과 보증계약서에 직접 자필로 서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음. 상기 조정내용(일부인용)은 이해와 같은 이유에 근거함. 신청인과 추채무자는 부부사이므로 신청인은 연대보증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채무자인 이비지의 정압으로 입보하게 됨. 재판 정황상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보증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대송과정에서 전화 통화로 통해 자필서명 통지업무 진위에서 사실과는 다르게 거짓 시인한 점이 인정됨. 특히 추채무자와 신청인의 주소지가 같아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 주소지로 발송할 경우 추채무자가 대신 수령하여 신청인 몰래 대리서명할 가능성이 대하여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자필서명 업무를 유산상, 즉 구부로부터 확인하였을 뿐 자필서명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인정됨. 그 밖에 관련 법률의 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과 항변, 신청인의 사정(구급, 수입 등)과 권리가 부족한 변제능력 등 제반 상황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책임을 분쟁조정 신청일 기준 잔존채무의 30%로 조정하고 피신청인에게 6개월 분할납부할 것을 권고함.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결정을 하고 수락을 권고한다. 2015년 7월 22일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대부업분쟁조정결정서	
① 조정번호	2015 -
② 조정일자	2015.12.8.
③ 사건명	보증채무 무효확인 등 조정 신청
당사자	④ 신청인 ⑤ 피신청인
⑥ 조정내용	신청인이 잔존채무의 30%를 피신청인에게 납부하고 피신청인은 나머지 보증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해 줄 것을 권고함(일부인용)
⑦ 수락권고기간	조정결정서 통지도달일로부터 20일
⑧ 신청 취지	자필서명 않은 보증계약의 무효확인 등 조정을 신청함
⑨ 이 유	본건 제출자료와 관련 당사자를 조사 및 심리한 결과 보증계약서에 직접 자필로 서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음. 상기 조정내용(일부인용)은 이해와 같은 이유에 근거함. 계약체결 당시 신청인과 추채무자는 연대보증시 신청인은 연대보증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채무자인 인원의 요청과 증인의 연대보증으로 인해, 보증책임이 부존재 등과 같은 기망행위에 의해 본, 오히려 입보하게 됨.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추채무자의 동원수령주소지가 동일할 경우 추채무자의 신청인 대리인으로서 및 대리 서명의 위험(오해명의 위험 등)이 수반하여 함께 업무 등으로 이해하였고, 본인 관련 서류상 동원상 서명이 사실로 인정되지 않는 등 서무원리상의 주의를 기울였음 또한 신청인의 자필서명 여부를 유산상, 즉 구부로부터 확인하였음 등 신청인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과실도 인정됨. 또한 대부업개업자의 대부업자가 사실상 경제적 이익공동체임을 고려할 때, 대부업개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판례 감독 책임이 대부업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불리한 대부업자의 조정과 장치를 위해 기울여야 할 상당한 주의를 다했고, 모두 합쳐서 이해한 것으로 판단됨. 위와 같은 취지와 동원상 신청인이 위법행위 동원상 결과에서 사정(구급, 수입 등)과 권리가 부족한 변제능력 등 제반 상황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책임을 분쟁조정 신청일 기준 잔존채무의 30%로 조정하고 피신청인에게 6개월 분할납부할 것을 권고함. 그 밖에 관련 법률의 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과 항변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책임을 분쟁조정 신청일 기준 잔존채무의 30%로 조정함.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결정을 하고 수락을 권고한다. 2015년 12월 8일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57/59

[별첨]

대부업분쟁조정결정서 모음

대부업분쟁조정결정서	
① 조정번호	2016 -
② 조정일자	2016.5.26.
③ 사건명	대부중개업자 위법행위에 대한 대부업자 손해배상책임진
당사자	④ 신청인 ⑤ 피신청인
⑥ 조정내용	대부중개업자가 신청인에게 허위로 약속한 10.2% 이자율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실제로 적용한 39.0% 이자율의 차이가 해당되는 이자(다만, 대부중개업자가 피신청인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은 차감한다)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할 것을 권고함(일부인용)
⑦ 수락권고기간	조정결정서 통지도달일로부터 20일
⑧ 신청 취지	대부중개업자 위법행위에 대한 대부업자 손해배상을 신청함
⑨ 이 유	본건 제출자료와 당사자를 조사한 결과 신청인이 대부중개업자(사기의 유희 편견)의 "저금의 갈타타기" 기망행위에 속아 상기와 같은 고율의 이자(39%)를 전부 지급한 것으로 확인됨. 상기 조정내용은 다음을 고려한 것임. 먼저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는 계약에 의해 상호간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경제적 이익공동체이므로 대부중개업자의 기망 등 불법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함이 타당함. 그리고 피신청인은 기망행위를 한 대부중개업자가 피신청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부중개업자의 하청업체이기 때문에 대부업자의 직접적인 권리·감독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금융소비자가 위탁계약업체(상위대부중개업자)·하청업체(하위대부중개업자)를 구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대부업자의 권리·감독 책임이 직접 위탁계약업체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음(대부업법 제11조의 3 참조). 저금의 갈타타기와 같은 불법행위가 만연한 점을 피신청인이 주지하고 있던 터 고 예방을 위한 보다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도 참조함. 한편 신청인은 위 기망행위에 불구하고 대부업자와 직접 계약을 실제 이자율을 인지한 채 체결하였고 약속과 다른 고율의 이자를 완납하기까지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음. 그 밖에 관련 법률의 취지, 진정할 대부업분쟁의 조성을 위한 제반 여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과 항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책임을 위와 같이 산정함.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결정을 하고 수락을 권고한다. 2016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58/59

감사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소비자신용채권의 추심

정 소 민*

목 차

I. 서 론	3. 시사점
II. 소멸시효와 완성된 채권의 추심	VI.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인가.	1. 소멸시효 이익 포기에 관한 특칙
2. 채권추심법 제11조 제1호의 해석	2. 소멸시효 완성 사실의 고지
3. 소결	3.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추심 행위 금지
III. 외국의 입법례	4.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양수도 금지
1. 미국	V. 결 론
2. 영국	

I. 서 론

근래 일부 대부업체나 채권추심업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매입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채무자에게 소액변제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장기간에 걸쳐 채권을 추심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추심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하자 금융감독원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양도를 제한하거나¹⁾ 법률상담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²⁾

그런데 우리 민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어느 학설에 따르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 청구를 하거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이 문제되는 것은 첫째, 그 채권이 대부분 소액의 소비자신용채권으로서 소비자인 채무자를 보호할 필요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금융감독원, 2015. 8. 7. 보도자료,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에 따른 서민피해 예방대책.

2)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서울시는 다산콜센터, 민생침해 신고사이트 '눈물 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 등을 운영하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이행을 거절하였음에도 채권추심을 계속할 경우 신고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2015. 10. 대부업자가 추심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모아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다수가 서민 또는 취약계층에 해당하고 소멸시효제도 자체 또는 그 대응 방법을 잘 알지 못하여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일부 변제 등을 통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장기간 추심업체의 채권추심에 시달리게 된다.³⁾ 둘째, 금융회사 등 채권자가 장기간 채권을 관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권을 대량으로 전문적인 추심업체에 양도함으로써 소멸시효제도의 본래 취지를 일탈하고 금융산업에 대한 불신과 비난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추심의 과정에서 전문적인 추심업자가 채무자를 오도하여 시효완성의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무자로 하여금 시효 이익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그 추심의 도구로서 지급명령 등 사법제도를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정의 관념상 용인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아래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행위의 규제 가능성을 민법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이라 한다)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미국과 영국의 입법례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II.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인가.

채권추심법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동법 제11조 제1호), 이를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5조 제2항 제4호). 그런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위 규정상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에 포함되는지가 해석상 문제된다.

위 조항은 2009년 채권추심법의 제정 당시부터 존재하였는데 원안에는 “허위 또는 무효이거나 명백히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로 되어 있었다.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허위’는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포섭될 수 있어 굳이 ‘허위’라는 문구를 둘 필요는 없으며, ‘명백히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은 어느 정도 존재하지 않아야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하여 ‘허위’와 ‘명백히’가 삭제되었다고 한다.⁴⁾

우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존재성 여부를 논하기 위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를 살

3) 20대 국회 개원 후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틀치 세비를 주빌리 은행에 기부하여 2,525명의 부실채권을 매입·소각시켰다. 소각된 부실채권의 97%는 원금 400만 원 이하의 소액채권으로 모두 10~20년 이상 된 장기연체채권이다. 원 채권자인 저축은행, 캐피탈, 신탁 등에서 추심업체로 최대 10번까지 팔렸다. 123억 원의 채권을 매입하는 데 실제 들어간 비용은 0.1% 수준인 1,230만원이라고 보도되었다. <http://www.vop.co.kr/A00001029450.html>

4)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강경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안(박민식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2009. 1.

펴보기로 한다.

(1)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한 학자는 1999년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라는 논문 첫 머리에서 “민법 제167조는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음을 밝히고 있을 뿐, 그 외에는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그 효과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는 민법 제정 당시부터 매우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고, 이러한 논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⁵⁾고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2016년 현재에도 그 논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의 학설상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그 효과로서 권리가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다만 소멸시효 완성 그 자체만으로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는지(절대적 소멸설), 아니면 소멸시효의 완성 외에 당사자의 원용이라는 별개의 요건까지 갖추어야만 비로소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는지(상대적 소멸설)에 대하여 의견이 갈리고 있다.⁶⁾

(가) 절대적 소멸설

절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당연히 권리가 소멸한다고 보는 입장이다.⁷⁾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논거를 들고 있다. 첫째, 우리 민법의 제정과정에서 입법자의 의사는 절대적 소멸설을 택하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⁸⁾ 의용민법 제145조에서 “시효는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지 않으면 법원이 이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는데 민법을 제정하면서 이 조문을 삭제하였다. 둘째, 민법총칙 소멸시효장(章)에 소멸시효의 완성의 효과를 명문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민법 제369조,⁹⁾ 민법 제766조 제1항,¹⁰⁾ 민법 부칙(1958. 2. 22.) 제8조 제1항 등에서 “시효로 소멸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그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을 예정하는 것이다.¹¹⁾ 셋째, 절대적 소멸설의 입장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권리는 누구의 원용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소멸하

5) 윤진수,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민법논고 II, 236면.

6) 윤진수,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40면.

7)곽윤직 김재형, 민법총칙 [민법강의 I], 제9판, 박영사, 2013, 448면; 양창수,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고시계, 고시계사, 1994, 149-152면; 이영준, 민법총칙 개정증보판, 박영사, 2007, 834-835면; 이은영, 민법총칙 제5판, 박영사, 2009, 778면.

8) 상대적 소멸설을 지지하는 학자도 우리 민법의 입법자의 의사가 절대적 소멸설을 택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은 긍정하고 있다. 윤진수,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39면.

9) 민법 제369조는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10)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11) 절대적 소멸설의 입장에서는 민법 제495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무자는 상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의 당사자는 서로 채권관계를 결제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이러한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법정채적 규정이라고 보고 있다. 곽윤직, 민법총칙, 신정수정판, 1998, 477면 참조.

로 누구나 필요하면 그 소멸을 주장할 수 있고, 별도로 누가 시효원용권자에 해당하는지를 가릴 필요가 없으나,¹²⁾ 상대적 소멸설에 따르면 원용권자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어려운 문제를 남기게 되는데, 민법은 원용권자의 범위에 대해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 상대적 소멸설

상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당연히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의무자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원용권이 생길 뿐이며, 이 원용권의 행사로 비로소 권리가 소멸한다고 보는 입장이다.¹³⁾ 첫째,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권리자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절대적 소멸설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직권으로 소멸시효를 고려하여 재판하여야 하는데, 절대적 소멸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변론주의로부터는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시효의 이익을 받겠다는 주장을 하지 않는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판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없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고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어긋난다.¹⁴⁾ 둘째, 절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¹⁵⁾ 셋째, 절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변제한 때에는 비채변제가 되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되나, 이는 사회관념에 어긋난다.¹⁶⁾ 넷째, 비교법적으로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그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는 체계를 취한 법제는 거의 없고, 상대적 소멸설의 태도와 유사한 법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가 많다.

(다) 판례

판례는 절대적 소멸설을 따르고 있다고 보는 것이 과거 일반적인 견해였으나, 실제로 판례가 어느 견해를 따르고 있는가는 반드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¹⁷⁾ 오히려 1990년대 후반 이래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주류적 태도는 상대적 소멸설을 따

12) 양창수, 고시계, 150면.

13) 윤진수,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36면 이하; 윤진수, 소멸시효론, 한국 민법학의 재정립 -청헌 김증한 교수의 생애와 학문세계, 경인문화사(2016), 169-193면; 김상용, 민법총칙 [제3판], 화산미디어, 2014, 722면; 김문희, 소멸시효완성의 효과를 원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59 판결-, 판례연구 20집, 부산판례연구회(2009), 686-687쪽; 노재호, 소멸시효의 원용 - 원용권자의 범위와 원용권자 상호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법논집 제52집, 법원도서관(2011), 254-258면; 김병선, 시효원용권자의 범위, 민사법학 제38호(2007), 한국사법행정학회, 254면; 박운삼, 사해행위의 수익자와 취소채권자의 채권의 소멸시효의 원용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 54849 판결-, 판례연구 21집, 부산판례연구회(2010), 260-261면; 백태승, 민법총칙 [제6판], 집현재, 2014, 561-562쪽; 소멸시효 항변의 소송상 취급, 법조 통권 508호, 법조협회(1999), 43면.

14) 윤진수,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44-245면.

15) 윤진수,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45면.

16) 윤진수,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45면. 절대적 소멸설에서는 이 경우 민법 제744조에서 규정한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 해당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 상대적 소멸설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없다는 비판이 있다.

17) 윤진수,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민법논고 II, 246-247면.

르고 있다고 평가된다.¹⁸⁾

먼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인지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다2445 판결은,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의 완성으로써 채무는 당연히 소멸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에 기하여 한 가압류는 불법행위가 되고, 가압류 당시 시효의 원용이 없었더라도 가압류 채권자에게 과실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다. 이 대법원 판례는 절대적 소멸설에 따른 가장 전형적인 판례라고 할 수 있다.¹⁹⁾ 한편 대판 1978. 10. 10, 78다910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원용이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있었어도 경락인은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한다.²⁰⁾ 또한 대판 1985. 5. 14, 83누655 및 대판 1988. 3. 22, 87누1018는 국가의 조세부과권도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당연히 소멸하므로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조세부과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그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한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절대적 소멸설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실제 소송에 있어서 시효소멸의 이익을 받겠다는 항변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음은 변론주의의 원칙상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²¹⁾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²²⁾라고 판시하여 시효완성의 이익을 원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가령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²³⁾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²⁴⁾ 또한 소멸시효의 주장이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고 한다.²⁵⁾

대법원 판례가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된다고 판시한 것은 상대적 소멸설의 법리를 수용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채무자의 일반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직접 할 수는 없고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대위행사를 할 수 있을 뿐이라는 판시 역시 절대적 소멸설로는 설명하기 어렵다.²⁶⁾ 또한 소멸시효완성의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18) 양창수, 판례평석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그 후의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가?”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 2015. 7. 27.자 법률신문.

19) 윤진수,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47면.

20) 이재성, “저당채무의 시효소멸과 경매의 효력”, 이재성 판례평석집 5, 315면 이하

21) 대판 1964. 9. 15, 64다488; 대판 1968. 8. 30, 68다109; 대판 1979. 2. 13, 78다2157 등.

22) 대판 1992. 11. 20, 92다35899.

23) 대판 1992. 11. 20, 92다35899.

24) 대판 2012. 5. 10, 2011다109500; 대판 1997. 12. 26, 97다22676 등 다수.

25) 대판 2013. 12. 26, 2011다90194, 90200; 대판 2003. 3. 28, 2002두11028; 대판 1997. 12. 12, 95다29895 등 다수.

26) 장석조, 42면; 윤진수,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49면. 소멸시효를 누구나 원용할 수 있다면 구태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원용할 필요 없이 직접 주장하면 되고, 절대적 소멸설과 같이 소송상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단순한 소송행위에 불과하다면, 판례가 개개의 소송행위에 대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또한 절대적 소멸설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한다.

하는 것도 상대적 소멸설에 따를 때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종래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의 대립은 이론구성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실제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논쟁으로 이해되었다.²⁷⁾ 그러나 대법원 판결례에서 보듯이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상대방이 채무자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원용권자의 범위와 그 효과가 문제되고 있다.²⁸⁾ 또한 근원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이른바 시효원용권이 생기는 것인지가 근래 채권의 추심행위를 중심으로 문제되고 있다.

2. 채권추심법 제11조 제1호의 해석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학설상의 대립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대법원 판례도 어떤 견해를 취하고 있는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소멸시효가 완성한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 채권추심법 제11조 제1호가 금지하고 있는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1) 긍정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것으로서 채권추심법 제11조 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견해이다. (i) 입법자가 ‘명백히’를 삭제한 의도는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대한 종래의 학설의 대립과 판례의 태도를 감안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현행 민법상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규정이 모호하여 학설의 대립이 첨예하고 법원 판례의 태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명백히 소멸한 채권’으로 규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입법자는 처음부터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법률을 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ii)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하여 절대적 소멸설을 채택하는 한 추심의 대상이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은 변론주의에 입각하여 채무자가 항변으로 주장하여야 한다는 측면과는 별개로 추심의 불공정성만을 고려한 것이다. (iii) 법률은 그 해석이 필요한 당시의 사회사정을 감안하여 적절히 해석되어야 한다. 금융회사인 채권자와 일반 서민인 채무자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경제적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한다. 시효로 소멸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가 현실에서 비일비재하여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것도 경제적 약자에게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채권자와 채권추심회사는 원칙적으로 시효관리를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27) 윤진수,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65면.

28) 대판 2015. 6. 11, 2015다200227.

채권자나 채권추심회사에게 소멸시효와 관련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²⁹⁾

(2) 부정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 제11조 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채권추심법의 소관부처인 법무부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i) 대법원에서 소멸시효의 완성 효과에 관해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면서도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의사에 반하여 재판을 할 수 없고, (ii)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인지 여부는 형사처벌 대상인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엄격해석의 원칙이 적용되고, (iii) 당초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은 ‘허위채권’을 포섭하는 개념으로 상정하여 입안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항변사유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허위채권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채권이 존재하였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과 동일하게 추심의사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반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³⁰⁾

(3) 하급심 판례의 태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3나55675 판결³¹⁾

이러한 학설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행위가 채권추심법 제11조 제1호의 금지행위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판단한 하급심 판례가 선고되었다.

(가) 사실관계

원고가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는 1997. 7. 금융기관과 사이에 십억 원을 한도로 하는 계속적 어음할인 및 어음거래 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원고는 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위채무(이하 ‘이 사건 원인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사의 지위에서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원인채권은 2001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되었고, 2012년 대부업과 부실채권의 매입 및 매입채권 관리에 관한 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에게 다시 양도되었다. 각 양도 때마다 채무자인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원고에게 채권의 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피고는 이 사건 원인 채권을 양수한 후 원고에게 세 차례에 걸쳐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냈다.

29) 정영수·박지원,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연구, 2015년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148면.

30)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토의견,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추심 표시 가부, 2011. 2.

31) 이 사건은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대판 2014. 12. 11, 2014다55574.

- (1) 2012. 10월경 ‘방문실태조사착수결정문’이라는 제목으로‘(...) 귀하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연체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재산실사조사차 귀택에 자산 실태조사차 방문이 확정되었으며, (중략) 연체금액은 549,745,927원, 방문조사에 정일은 2012. 11. 1.부터 11. 7.까지 5일간, 집행시 집행장소(주택/실거주지)가 폐 문부재로 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집행관 및 증인2명과 열쇠공 대동하여 강제개문후 집행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강조문언 표시를 기재한 문서를 보냈다.
- (2) 2012. 12. 4.경 ‘압류 및 강제집행 통보서’라는 제목으로 ‘이미 고지한 대로 재산 조사에 기초하여 원고의 재산에 강제법적 조치에 착수함’이라는 요지가 기재된 문서를 보냈다.
- (3) 2013. 1. 4.경 ‘보증채무금에 대한 최고’라는 제목으로 ‘2013. 1. 15.까지 선의적인 자진변제 의사를 표명해 달라’ 및 ‘변제협의를시한 2013. 1. 15. 채무금 558,642,007원’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는 위 변제기한으로 스스로 표시한 2013. 1. 15.까지는 물론 변론종결일인 2014. 5. 15.까지도 아무런 채권 추심절차에 착수한 바가 없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보증채무는 이미 소멸시효의 완성 등으로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채권이 있는 것처럼 문서를 보내 몇 달간에 걸친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괴로움을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 200만원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피고의 보증채권의 소멸시효가 2004. 10. 18. 완성되었고,³²⁾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그로부터 위 채권을 재차 양수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2. 10월경부터 2013년 1월경까지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면서 이미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한 것처럼 표시되어 있는 문서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대부업과 부실채권의 매입 및 매입채권 관리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문서를 보낼 당시 원고의 보증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반복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의 추심 의사를 원고에게 표시하였으므로 피고의 그러한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및 제4호에서 각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 행위에

32) 피고의 보증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없으므로 판례의 논지를 자세히 실시하지 않는다.

고의,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므로 같은 법 제14조³³⁾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 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 검토

1) 위 판결은 원고의 보증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후 피고의 행위가 채권추심법 제11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하여 절대적 소멸설을 따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이 절대적 효력설 뿐만 아니라 상대적 효력설의 입장에서 판시한 판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과 1990년대 후반 이후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주류적인 흐름을 고려하면, 위 판결에서 피고의 보증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의 행위가 채권추심법 제11조 제1호의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부분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³⁴⁾

2) 위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세 차례 이행 최고 및 강제집행 예고의 문서를 보냈음에도 변론종결일인 2014. 5. 15.까지도 아무런 채권 추심절차에 착수한 바가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채권추심법 제11조 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에는 해당함이 명백하다. 법원도 피고의 행위가 제11조 제4호에 위반됨을 이유로 채권추심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적으로 피고의 행위가 채권추심법 제11조 4호를 위반한 행위라는 점에는 동의하나 채권추심법 제11조 1호도 위반하는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쉽사리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이 판결은 불법적인 채권추심활동을 한 대부업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그 추심 업무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서는 충분한 의미가 있으나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

33) 채권추심법 제14조(손해배상책임) 채권추심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추심자가 사업자(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규정된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에 따라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4) 다만 판결문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원고가 자신의 보증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음에도 피고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이행 최고 및 강제집행 예고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한 것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2년 10월경 첫 번째 이행 최고를 받은 후 피고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원고가 이와 같이 시효이익을 ‘원용’하였다면 그 원용으로 보증채권이 소멸하고, 그 이후 피고의 행위는 채권추심법 제11조 제1호의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대적 소멸설을 따르고 있는 대법원 판례의 주류적인 태도와도 배치되지 않는다.

심행위가 채권추심법 제11조 제1호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선례적 의미가 있는 판결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3. 소 결

우리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또는 추심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절대적 소멸설에 따를 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여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면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가 되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고,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변론주의원칙에 따라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하여야 법원이 비로소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한다. 상대적 소멸설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이행을 소를 제기하는 경우 모두 채무자의 원용이 있어야만 비로소 채무가 소멸하므로 이행청구나 소 제기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행위가 문제되는 이유는 추심과정에서 나타나는 추심업체의 기만적이고 편법적인 행위 때문이다.

첫째, 위에 소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3나55675 판결에서는 원고가 추심업체의 추심행위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위법한 추심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많은 두려움을 느낀다. 추심업체가 “오늘 1만원만 입금하면 원금을 일부 감액하여 주겠다”는 등의 채무자를 오도하는 행위를 하고 이에 휩쓸려 채무자가 시효 완성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일부 변제를 하거나 변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와 그 대응 방법을 모르는 일반 채무자를 상대로 전문적인 채권추심업체가 채무자의 부지(不知)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일부 변제 또는 채무이행각서를 쓰게 함으로써 시효 이익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기만적인 행위를 우리 사회의 정의 관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둘째, 추심업체가 추심의 도구로서 사법제도를 오남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급명령제도의 오남용이 두드러진다. 지급명령의 신청에 대해서는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민사소송법 467조), 관할 위반 등 일정한 각하사유가 없으면 청구가 이유 있는지 여부를 심리할 필요 없이 지급명령이 발하여지는 점을 이용하여 대부업체 등은 지급명령제도를 편법적인 소멸시효기간 연장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2주의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취하·각하결정의 확정시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민사소송법 474조),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민사집행법 제56조)이 된다.³⁵⁾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은 민법 제165조 제2항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된다.

35) 확정된 지급명령은 재심이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로 다룰 수 있으며,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다른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 지급명령 이전의 발생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대판 2004. 5. 14, 2004다11346; 대판 2002. 2. 22, 2001다73480 참조.

이러한 기만적이고 편법적인 행태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행위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문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영국에서도 제소기간이 만료된 소비자신용채권의 추심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의 개선 및 금융산업 규제 등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비교법적 관점에서 이들 제도에 대하여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행위를 명확히 규제하기 위하여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Ⅲ. 외국의 입법례

1. 미국

(1) 제소기간법의 의의와 효력

제소기간법(Statute of Limitations)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을 정하고 그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권(訴權)을 제한하는 법이다.³⁶⁾ 미국에서는 주별 입법례에 따라 제소기간이 상이하나 채권의 경우에 그 제소기간은 대부분 6년이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제소기간이 만료된 경우 채무 그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소권(訴權)이 제한되는 것으로 규율하고 있다.³⁷⁾ 제소기간이 만료되면 소권이 소멸되고 기존의 채무는 자연채무로 존재하게 된다. 제소기간이 만료된 채권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제소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것을 적극적인 항변(affirmative defense)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공정채권추심업법과 제소기간이 만료된 채권에 대한 추심

(가) 제소기간이 만료된 채권의 추심

제소기간이 만료된 채권의 소권(또는 구제수단)은 다시 부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경우에 소권의 부활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첫째, 채무자가 제소기간이 만료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거나 그 채무의 지급을 약속하면 소권이 부활하고 그 시점부터 다시 새롭게 제소기간이 진행된다. 소권이 부활하였으므로 추

36) 제소기간법의 목적은 알고 있는 권리에 대하여 성실한 청구를 촉구함으로써 법률문제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과 완결성을 제공하고 증거가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하고 신선할 때 그 권리가 해결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소멸시효제도와 유사하다.

37) 미시시피주와 위스콘신주에서만 제소기간의 만료로 채권 자체가 소멸한다는 법제를 취하고 있다. (miss. code ann. § 15-1-5; wis. stat. ann § 893.05). 노스 캐롤라이나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채권양수인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으나 완전히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N.C. Gen. Stat. § 58-70-115).

소비자신용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

심업자는 그 채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둘째, 채권자가 채소기간이 만료된 채권을 소구(訴求)하였는데 채무자(피고)가 채소기간이 만료되었다는 항변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실제로 채권추심소송에서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결석판결(default judgment)로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지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다.³⁸⁾

채소기간이 만료된 채권의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추심업체는 채무자에게 채소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i) 채소기간의 만료 등 자신의 채무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하는 채무자에게 일부 변제 또는 채무의 지급 등을 약속하도록 유도하거나, (ii) 소송을 제기하여 결석판결로 승소판결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등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추심 행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나) 공정채권추심법 위반 여부

미국에서는 연방법인 소비자신용보호법(The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CCPA) 5장(Subchapter V)에 공정채권추심법(The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FDCPA)³⁹⁾을 두고 채권의 추심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규율하고 있다. 공정채권추심법은 정기적·규칙적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추심업자에게 적용된다. 추심기관, 정기적·규칙적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변호사, 미회수 채권을 양수하여 추심하는 회사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공정채권추심법상 ‘추심업자’에 원(原) 채권자(original creditors)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부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자기 직원을 시켜서 추심하는 경우 등에는 공정채권추심법의 적용이 없다.⁴⁰⁾ 또한 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소비자의 채무는 가계목적의 소비자 신용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⁴¹⁾

공정채권추심법상 채소기간이 만료된 채권의 추심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은 없으나, 채소기간이 만료된 채권의 추심이 공정채권추심법 제807조 및 제808조 위반 여부가 문제되었다.

미국법상 채소기간이 만료했다라도 소권이 제한될 뿐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추심업자는 채권추심업자는 채소기간이 만료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를 접촉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 미국 법원도 채소기간이 만료된 채권에 대하여 채무의 변제를 최고하는 것과 같은 통상적인 채권추심행위는 공정채권추심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다.⁴²⁾ 그러나 미국 법원은 채소기간이 만료된 채권에 대하여 (i) 소송을 제기하는 것⁴³⁾ 또

38) 미국 채권추심소송의 70-90%가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결석판결로 마무리 된다고 한다. Federal Trade Commission, *Repairing a Broken System: Protecting Consumers in Debt Collection Litigation and Arbitration*(2010. 7), p. 7.

39) 우리나라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모델이 되었다.

40) 15 U.S.C. 1692a (6)(A).

41) 15 U.S.C. 1692a (5).

42) *Martinez v. Albuquerque Collection Services.*, 867 F. Supp. 1495, 1506(D.N.M. 1994); *Freyermuth v. Credit Bureau Servs.*, 248 F.3d 767, 771 (8th Cir. 2001); *Huertas v. Galaxy Asset Mgmt.*, 641 F.3d28 (3d Cir. 2011); *Mavilla v. Wake-Med Faculty Physicians*, 2013

는 (ii)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장래에 소를 제기할 것을 위협한 경우에는 공정채권추심업법 위반이라고 판시하였다.⁴⁴⁾

미국법상 제소기간이 도과했다라도 소권이 제한될 뿐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제소기간 만료의 항변을 제출하여야 하므로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공정채권추심업법은 제807조에서 “채권추심인에게 채권의 추심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기망적이거나 오도하는 표시 또는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구체적으로 “채권의 성질, 총액 또는 법적 상태에 대한 허위 표시”를 하거나 “법적으로 불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할 의도가 없음에도 이를 취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제807조에 위반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⁴⁵⁾ 또한 제808조는 추심업자가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불공정하거나 비양심적인 수단(unfair or unconscionable means)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 법원은 소비자신용채권의 제소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그 채권에 대한 소권이 제한된다는 것을 잘 아는(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잘 알 것으로 생각되는) 전문적인 추심업체가 추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소 제기를 위협하는 것은 채권의 추심과 관련하여 기망적이거나 오도하는 표시 또는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폭넓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소비자신용채권의 경우에 소비자가 채권의 제소기간 만료 여부 등 그 채무의 법적 상태에 대해 정확한 지식이 없고, 제소기간이 만료된 채권에 관하여 추심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자체가 법을 잘 모르는 소비자들에게는 두려움을 유발시켜서 제소기간이 만료되었다는 항변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조건 갚아야만 하는 채권으로 잘 못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3) 주(州) 법률상의 규제

미국에서는 연방법인 공정채권추심업법 이외에 주법으로 제소기간이 만료된 채권의 추심

U.S. App. LEXIS 18803 (4th Cir. Sept. 10, 2013).

43) *Kimber v. Fed. Fin. Corp.*, 668 F. Supp. 1480, 1488 (M.D. Ala. 1987). 이 판결에서 법원은 “제소기간이 만료된 후 제기된 채권추심소송은 공서양속의 문제로서 부당하고 불공평하며, 이는 소비자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하면서 위와 같은 채권추심소송의 제기는 공정채권추심업법상의 기망적인 행위이고(제807조) 불공정·비양심적인 수단(제808조)이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제소기간 만료는 적극적인 항변으로 제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44) *Larsen v. JBC Legal Group, P.C.*, 533 F. Supp. 2d 290 (E.D.N.Y. 2008)

45) 공정채권추심업법 제807조 허위 또는 오도하는 표시(False or misleading representations) 채권추심인은 채권의 추심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기망적이거나 오도하는 표시 또는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전문(前文)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 이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 역시 본조의 위반에 해당한다.

(...)

(2) 다음의 사항에 관한 허위 표시

(A) 채권의 성질, 금액 또는 법적 상태

(...)

(5) 법적으로 불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할 의도가 없음에도 이를 취하겠다고 하는 위협

소비자신용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

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령을 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주요 내용은 (i) 채권추심자에게 제소기간 만료사실 고지의무, (ii) 결석재판제도 개선, (iii) 채권양수인인 채권추심자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이다.

(가) 제소기간 만료사실의 고지의무

뉴욕주는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의 제소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한 이후에만 해당 채권의 추심이 가능하도록 입법하였고,⁴⁶⁾ 노스 캐롤라이나주에서도 추심업자가 채무의 승인이나 제소기간 만료 이익의 포기의 효과, 채무자에게 승인이나 포기의 의무가 없음을 공개하지 않고 제소기간이 만료된 채무의 승인을 구하거나 제소기간 만료 이익의 포기를 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⁴⁷⁾ 즉 추심업자에게 제소기간이 만료된 채권의 법적 상태에 대하여 적극적인 고지의무를 부과하여 제소기간 만료의 법률상 의미를 잘 모르는 채무자를 오도하여 그 이익을 포기하도록 하는 행위를 법률상 금지시켰다.

(나) 민사소송규칙 개정: 결석재판제도의 개선

미국에서 추심업체가 제소기간이 만료된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결석판결(default judgment)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 사회 문제화 되자 뉴욕주는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하였다.⁴⁸⁾ 주요 내용은 (i) 결석재판제도에서 채무자에 대한 송달제도를 강화하고, (ii) 채권추심자로 하여금 채권의 유효성 및 채권양도이력을 포함하여 결석판결을 뒷받침하는 상세한 증거를 포함하는 선서진술서(affidavit)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결석판결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iii) 제소기간이 만료된 채권에 대한 소송 제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변호사로 하여금 해당 채권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는 선서 진술서(affidavit)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⁴⁹⁾ 노스 캐롤라이나주도 채권양수인이 신청한 결석재판 및 약식재판(summary judgment) 선고 이전에 채권양수인은 채권의 법적 성질과 총액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여 제소기간 만료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⁵⁰⁾

46) N.Y.C. Admin. Code § 20-493.2. 제소기간 만료사실을 고지할 때 일반적으로 (i) 제소기간이 만료되어 채무자에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제한되고, (ii) 만약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그 채무에 대하여 일부라도 변제하면 채권자는 그 채권 전부에 대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다시 생기게 된다는 내용이 담긴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사용한다. "WE ARE REQUIRED BY LAW TO GIVE YOU THE FOLLOWING WARNING ABOUT PAYMENTS ON THIS DEBT. The statute of limitations bars a creditor from taking legal action, including using arbitration, to make you pay this debt. BE AWARE that if you voluntarily pay anything toward this debt, such payment can restart the creditor's right to take legal action to make you pay the entire debt."

47) N.C. Stat. Ann. § 58-70-115(1).

48) 개정된 민사소송규칙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49) New York State Unified Court System Press Release, "NY Court System Adopts New Rules to Ensure A Fair Legal Process in Consumer Debt Cases", September, 16, 2014. https://www.nycourts.gov/press/PDFs/PR14_06.pdf

50) N.C. Gen. Stat. § 58-70-155.

(다) 채권양수인인 채권추심자에 대한 추가 규제

노스캐롤라이나와 캘리포니아주는 채권추심자가 채권양수인(debt buyer)⁵¹⁾인 경우에 추가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 채권추심자가 채권양수인인 경우에는 그 채권추심자가 제소기간이 만료된 것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소제기, 중재절차의 개시는 물론 일반적인 추심행위도 금지하고 있다.⁵²⁾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13년 공정채권양수업법(Fair Debt Buying Practices Act)을 제정하고 채권양수인이 제소기간이 만료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 만료로 인하여 채무자가 소송을 제기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⁵³⁾

2. 영국

(1) 채권 추심에 관한 법제도

영국 금융감독청(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은 소비자신용자료집(Consumer Credit sourcebook)을 발간하고 금융회사의 신용과 관련된 활동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감독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신용자료집에는 제소기간이 만료된 채권의 추심과 관련된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다. 다만 미국이나 우리나라처럼 공정한 채권의 추심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두고 있지는 않다.

(2) 제소기간이 만료된 채권의 추심

영국 제소기간법(the Limitation Act)에 따르면 제소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소권(訴權)이 제한된다고 한다. 영국에서 일반 채권에 대한 제소기간은 6년(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이다(제소기간법 제5조).⁵⁴⁾

영국법상 제소기간이 만료된 채권은 여전히 존재하는 채권이며 추심가능한 채권이다.⁵⁵⁾ 그러나 제소기간이 만료된 채권이 추심가능한 채권이기는 하지만 대주 또는 채권자가 시효기간 동안 채무자와 접촉하지 않았다면 추심회사는 제소기간이 만료된 채권을 추심하려고

51) 채권양수인(debt buyer)이란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이행지체중이거나 소각처리된 대출채권 또는 신용계좌, 기타 이행지체중인 채권을 영업적으로 양도받는 자 또는 회사”를 말한다.

52) N.C. Gen. Stat. § 58-70-115(4). 제소기간 만료채권에 대한 일반적인 추심행위까지 금지한다는 점에서 연방법인 공정채권추심업법에 관한 판례가 제소기간 만료채권에 대하여 일반적인 추심행위는 허용하고 있는 것과 차별된다.

53) Civ. C. § 178852(d)(2),(3).

54) 영국에서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6년(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과 5년(스코틀랜드)이다. 본 논문에서는 영국의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지역에 적용되는 법리를 살펴보기로 한다.

55) 스코틀랜드에서는 시효로 소멸하기 전에 대주 또는 채권자를 대신한 이행청구가 없었거나 채무자가 그 채무를 승인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추심할 수 없다.

소비자신용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

해서는 안 된다(Rule 7.15.4). 만약 대주나 채권자가 채소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채무자와 접촉하였다면 회사는 그 채권을 추심하려는 시도를 계속할 수 있다(Rule 7.15.5). 추심회사는 채무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채무자를 오도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Rule 7.15.6).

추심회사가 채권의 채소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 채무자에게 그 채권에 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하거나 시사하는 것은 채무자를 오도하는 것이다(Rule 7.15.7).

추심회사는 대출계약 등에서 발생한 채권을 양수하려는 자에게 추심회사가 채소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것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채권을 특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회사가 그 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부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Rule 7.15.9).

채무자가 채소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변제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이후에 추심회사는 그 채무자에게 변제하라는 요구를 계속하지 못 한다(7.15.8. Rule).

6년의 채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판결(county court judgments)을 받았다면 채무자는 법원에 그 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하고 채소기간법상의 항변을 제출할 수 있다.

3. 시사점

미국과 영국 모두 채소기간이 만료된 채권의 추심 문제를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다.

(1) 미국과 영국은 모두 채소기간법에서 채소기간 만료시의 법률 효과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미국(미시시피주와 위스콘신주 제외)과 영국(스코틀랜드 제외)의 채소기간법에 따르면 채소기간이 만료된 채권은 소권(訴權)이 제한될 뿐이며 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채소기간이 만료된 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면 채무자는 채소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적극적 항변을 하여야 하고, 피고의 적극적 항변이 없으면 이행판결이 내려진다. 우리 민법상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고 학설 및 판례가 대립하고 있는 바,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에 관한 문제를 명확하게 규율하기 위해서는 채권추심법에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2) 미국과 영국에서는 채소기간이 만료된 채권 추심의 문제를 소비자신용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유지할 목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채소기간이 만료된 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소를 제기할 것을 위협하는 행위는 공정채권추심업법 위반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주의해서 보아야 할 점은 공정채권추심업법의 규율을 받는 채권과 추심업자의 범위이다. 공정채권추심업법의 규율을 받는 채권은 소비자신용거래에서 발생한 가계목적의 채권이고, 추심업자도 전문적으로 추심업을 영위하는 회사 등으로서 원(原) 채권자(original creditor)는 제외된다. 우리 채권추심법은 이 법의 규율

을 받는 채권의 범위에 대해 금전대여 채권이라는 것 외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채권추심자”에 대부업체, 여신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그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도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민법의 적용을 받는 사인간의 금전대출거래에서의 채권자의 추심행위도 채권추심법의 규율을 받고 있다. 따라서 채권추심법의 개정을 통하여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행위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으로서 규율대상인 채권과 채권추심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고민해야 할 것이다.

IV.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 문제가 대두되자 20대 국회에서는 복수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고 한다)을 발의하였다. 개정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과 관련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멸시효 이익 포기에 관한 특칙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과 관련하여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완성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추심기관의 오도행위에 말려들어 일부 변제를 한 경우에 이를 유효한 시효이익의 포기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종래 시효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한 때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하여 시효이익포기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⁵⁶⁾ 그러나 유효한 포기가 되려면 포기하는 자가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면서 한 것이어야 하는데,⁵⁷⁾ 당사자가 시효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오히려 시효완성의 사실을 모르고 한 것이 통상적일 것이고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면서도 승인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위 판례는 경험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었다.⁵⁸⁾

그 후에도 대법원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입장을 유지하였다.⁵⁹⁾ 그런데 2013년 대법원 판례는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그러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

56) 대판 1965. 11. 30, 65다1996; 대판 1967. 2. 7, 66다2173.

57) 곽윤직 대표편집(윤진수 집필부분), 민법주해[III], 554면.

58) 곽윤직 대표편집(윤진수 집필부분), 민법주해[III], 554-555면.

59) 대판 2001. 6. 12, 2001다3580.

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채무의 승인과 시효이익의 포기를 구별하면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에 반하여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고려하면, 추심기관의 오도행위로 인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으로 볼 수는 있을지라도 이것이 당연히 “채무 전체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경우 당사자의 의사와 목적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채무자의 효과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금액은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로서 반환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곧 채무 전체에 대한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단언할 수는 없고, 추심기관이 잔존 채무를 청구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여전히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는 항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소멸시효의 특례 및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추심 금지라는 표제 아래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알지 못하고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여(개정안⁶⁰) 제4조의2 제1항) 그 법적 효과를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알지 못하고 추심업자의 오도 행위에 유인되어 소액변제를 하더라도 채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

2. 소멸시효 완성 사실의 고지

대부업자 등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즉시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의 완성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안⁶¹) 제5조 제2항).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제소기간이 만료된 채권과 관련하여 추심업자에게 적극적인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일견 추심업자에게 적극적인 고지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채무자가 제소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인지하게 되어 추심업자의 채권추심소송에서 제소기간

60) 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1) 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만료의 항변을 하고 결국 추심업자는 채권추심에 성공하지 못하게 되므로 과연 추심업자가 이러한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인지 그 실효성에 관하여 의문을 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 소비자신용시장에서는 추심업자의 적극적인 고지의무와 채무자의 신용등급(credit rating)이 연계하여 작동하고 있다. 즉 추심업자가 채소기간이 만료된 채권이라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고지하면 채무자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 즉 채소기간이 만료되었다는 항변을 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러한 항변 없이 채무를 변제할 수도 있다. 만약 채소기간 만료의 항변을 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용등급은 하향 조정될 수 있고, 채무자가 향후 다시 소비자신용거래 등 금융거래를 할 때 그 거래가 거절되거나 금융비용이 증가될 수 있다. 한편 채소기간 만료의 항변을 하지 않고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채무자의 신용등급은 하향 조정되지 않게 된다는 이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미국과 같이 신용등급(credit rating)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에 추심업자에게 적극적인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는 향후 지켜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한편 개정안의 이 규정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감독규정 등을 통하여 시효완성 사실의 고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줄 필요가 있다. 예컨대, 소멸시효 완성 사실의 고지는 글자 크기 12 포인트 이상으로 문서에 기재되어야 하고,⁶²⁾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며, 만약 일부라도 변제하면 채권 전액에 대한 시효가 다시 기산하게 되어 채권자가 다시 채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다.

3.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추심행위 금지

채권추심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i)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소멸시효 이익 포기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ii) 시효중단의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신청, 가처분 신청, 지급명령 청구, 최고 등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행위를 금지하고(개정안⁶³⁾ 제4조의2 제2항),⁶⁴⁾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개정안⁶⁵⁾ 제17조 제1항 제1호).

개정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재판상 청구 등을 할 수 없다는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정책적인 판단 아래 둔 규정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통상적인 추심행위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채무자 보

6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8. 홈플러스가 응모권에 개인정보 활용동의사항을 1mm 크기의 글자로 고지하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점을 고려하면 소멸시효 완성사실의 고지의무를 부과할 때 구체적으로 글자 크기 등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3) 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4) 개정안 제4조의2 제2항의 입법 의도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청구 등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이익의 포기만이 문제되고 시효 중단은 문제되지 않으므로 “시효중단”이라는 문구는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5) 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호를 위한 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헌법상 비례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채권추심법상 “채권추심자”에는 민법의 적용을 받는 금전대여채권자도 포함되는데, 대부업자나 여신기관이 아닌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못한다는 것은 규제의 목적을 벗어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추심행위 금지의 인적 범위를 대부업체 등으로 제한하고 일반 사인간의 금전대여로 인한 채권자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행위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려면 채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 공정채권추심업법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가계목적 채권에 적용되는 법이고, 제소기간이 만료된 채권에 대한 일반적인 추심행위는 공정채권추심업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우리 채권추심법은 규율 대상인 채권이 금전대여채권일 뿐 그 금액이나 목적상의 제한이 없어서 그 적용 대상의 범위가 매우 넓다. 따라서 가계목적 소액 대출채권이나 보증채권 등으로 금지되는 채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 역시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⁶⁶⁾

4.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양수도 금지

대부업자 등이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무효인 채권이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양도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개정안⁶⁷⁾ 제11조 제2항 신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개정안 제15조 제3항 제3호 신설). 2015년 하반기부터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에 따라 대부업체 등이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양도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에 관한 조항을 명문으로 신설하였다.

V. 결론

금융산업의 양적인 팽창과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채권양수업이 급격히 증가하였고이에 비례하여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특히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은 법률 지식이 부족한 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업체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입법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우리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추심과정에서 기만적이거나 편법적인 행태가 만연하다면 이는 채무자 보호 및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채권추심법의 개정을 통하여 발 빠른 규제가

66) 금융감독원, 2015. 8. 10.자 보도자료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에 따른 서민피해 예방대책”에 따르면 원금기준 1천만원 이하의 소액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시 추심을 제한하는 내용을 관련 법률에 반영하는 방안을 건의한다는 내용이 있다.

67)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대출채권 부실화의 문제는 이미 수 년 전부터 우리 경제의 골칫거리로 대두하였고, 기업의 대출거래에서 반드시 이사 등을 보증인으로 세웠던 과거 금융관행에 따라 부실화된 개인의 보증채무도 다수 존재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기만적이고 편법적인 추심에 대해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양수도거래를 금지하고 추심행위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존재한다. 그런데 소멸시효제도는 본래 정당한 권리관계에 따른 권리 행사가 오랜 기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정당한 권리관계보다 오래 계속된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 상태를 존중하는 공익적 제도이다. 즉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관계가 소멸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매듭지으려는 것이 소멸시효제도의 취지임을 고려할 때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양도, 재양도를 통하여 장기간의 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소멸시효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의 보증채무의 경우 회사는 이미 파산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데, 그 당시 이사의 지위에서 보증채무를 부담한 개인을 쫓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증채무를 추심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기업대출에 따른 리스크를 개인에게 전가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조속히 입법되어 채권추심관행이 보다 건전화되기를 기대한다.

개정 대부업법의 주요 내용 및 쟁점

윤민섭 박사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원

1

I. 대부업법 개정 현황(1)

1. 19대 국회

- 2015년 7월 6일 통과 법안

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제도 개선

-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등 신설(제3조제2항)
- 대부업등에 관한 등록요건 신설(제3조의5)

나. 금융위 등록 대부업등의 임원 등의 결격사유 규정(제4조)

다. 유사상호 사용 금지규정 신설(제5조의2 제4항)

라. 자산한도 규제(제7조의2)

마. 대부업자들의 방송광고 시간 제한(제9조제5항)

바. 대부채권의 양도제한(제9조의4제3항)

사.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마련 등 내부통제제도 마련(제9조의7)

I. 대부업법 개정 현황(2)

아. 대주주와의 거래제한제도 및 신용공여한도 위반에 관한 규정(제10조 및 제14조의2)

자. 대부업자 등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장(제11조의4)

- 보증금예탁 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차. 협회의 주 사무소 소재지 자율화(제18조의2제3항)

- 2016년 3월 3일 통과 법안

가. 대업업체 및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 연 27.9% 이하로 규정(제8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 기존 법은 40% 이하로, 시행령은 34.9%로 제한

나. 대부업협회의 역할 및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 규정 마련

II. 세부내용 검토 – 금융위 등록 대부업(1)

1. 금융위 등록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대상 신설

- 대부업등을 다음과 같이 2가지 유형으로 구분

- 1)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유형(제3조제1항)
- 2) 금융위에 등록하는 유형으로 구분(제3조제2항)

: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함(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9조제1항1호)

대부업법	시행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 2.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4.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 5. 법인으로서 <u>자산규모 100억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u>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일 것 2. 제1호에 따른 자산 중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이하 "대부채권"이라 한다) 잔액이 50억원 이상 일 것

II. 세부내용 검토 – 금융위 등록 대부업(2)

-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금융위 등록 대부업 등을 신설함. 이에 따라 금융위 등록 대부업등은 금융위 및 금감원의 관리·감독을 받게 됨
- 그러나 요건상 한계가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상황임
 - 예를 들어, 최근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대부가 성행하고** 있는데, 이 경우 영업소를 지자체 한 곳에만 영업소를 두고, 자산규모가 **120억원을 넘지 않은** 경우 금융위 등록대상이 되지 않음
 - **법인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 등록대상이 되지 않음
- 위와 같은 경우를 위해 대부업법 제3조제2항 제6호를 두고 있지만, 이에 관한 시행령은 없음

II. 세부내용 검토 – 등록요건(1)

2.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요건

- 시·도지사에게 대부업등을 등록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시·도지사 등록(제3조의5제1항)

1.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을 갖출 것. 다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인 5천만원, 비법인 1천만원**)
2. 제3조의4에 따른 대부업등의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제3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 후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등록 후 교육을 이수할 것
3. 대부업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을 갖출 것
4.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제4조제1항에 적합할 것
5.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가. 최근 5년간 제4조제1항제6호 각 목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
 -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실이 없을 것
 - 다. 최근 1년간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사실이 없을 것(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 라. 최근 5년간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없을 것

II. 세부내용 검토 – 등록요건(2)

- 금융위에 대부업등을 등록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금융위 등록(제3조의5제2항)

1. 신청인이 법인일 것
2.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다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억)
3. 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의 요건을 갖출 것
4.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제4조제2항에 적합할 것
5.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을 하지 아니할 것
6. 대주주(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제6호 및 제7호에 관해서는 시행령 제2조의10 참조

- 자기자본 등의 산정기준에 대해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고시 사항 없음

II. 세부내용 검토 – 유사상호 사용금지

3. 유사상호 사용금지(제5조의2제4항)

- 대부업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 사용 금지
- 유사상호를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9조제2항)
- 유사상호의 사용금지 규정의 실효성은 의문임
 - 현실에서 ‘대부’라는 명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하고, 대부업등의 경우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명칭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업등을 하지 않으면서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음
 - 또한 미등록 대부업등의 경우 처벌이 5년이하 5천만원 이하로서 유사상호 사용시보다 높음

II. 세부내용 검토 – 대부한도 제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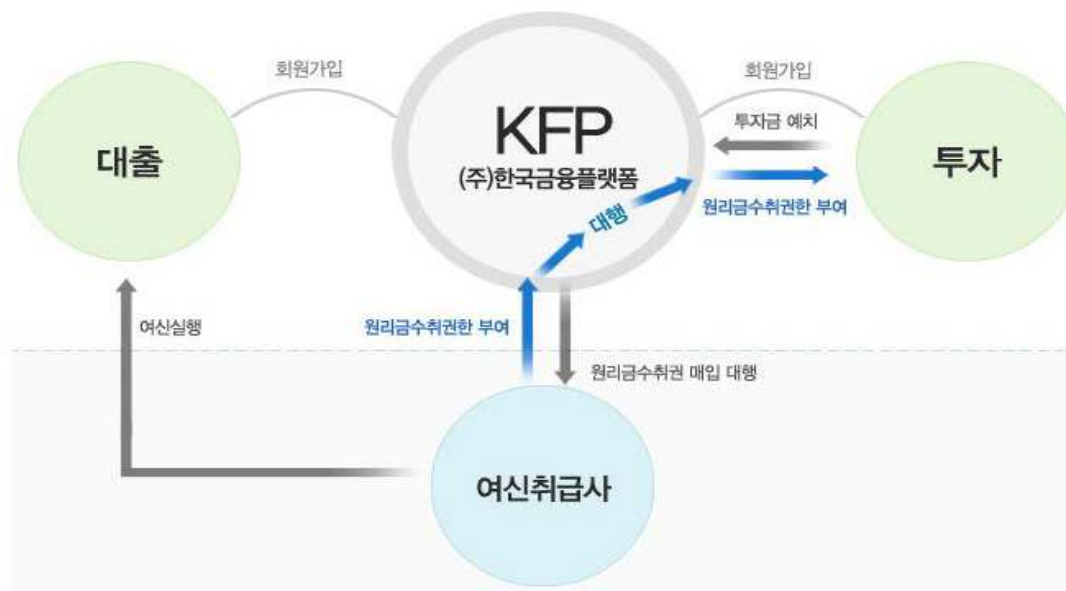
4. 대부한도 규제(제7조의3)

-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자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정하는 배수(시행령 제4조의4제1항 10배)
 - 이때 총자산의 산정기준은 상법 제30조의 대차대조표에 따름
- 대부한도 규제는 19대 국회시 정부안의 내용 중 하나도 발의된 것인데, 규제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음. 다만,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을 제한하기 위함으로 판단됨
 - 이와 유사한 규제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8조에서 자기자본대비 총자산한도를 10배로 제한하고 있음.
 -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있는 대부업자에 대해서 동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 고려 필요
- 최근 P2P 대출의 경우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데, 대출을 실행하는 대부업체의 경우 자산한도가 쟁점이 되고 있음(P2P 대출의 경우 다음 페이지 참조)
 - 원리금수취권의 경우 자산유동화의 한 유형으로 진정양도(True Sale)인 경우 자산보유자인 대부업자의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할 수 있음

II. 세부내용 검토 – 대부한도 제한(2)

- P2P 대출은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나, 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원리금수취권매매형임

<원리금수취권매매형의 계약구조>



II. 세부내용 검토 – 대부광고제한

5. 대부업자등의 방송광고 시간 제한(제9조제5항)

- 대부업자등은 다음과 같은 시간대에 방송을 이용한 광고를 하는 것이 금지됨
 - 1) 평일 :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2) 주말 : 토요일과 공휴일 :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방송시간의 제한은 과도한 방송광고 시간을 제한하여 건전한 금융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문형 비디오(VOD)의 경우 VOD에 광고가 삽입되는 형식으로 시간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음
- 현재 이와 관련하여 VOD(주문형 비디오)를 포함하여 방송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모든 대부업 광고를 제한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음
 - 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안('16.7.25)
 -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도 대출과 관련된 방송광고를 제한하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음(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16.7.25)

II. 세부내용 검토 – 대부채권 양도제한(1)

6. 대부채권의 양도제한(제9조의4제3항)

-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다음의 자 이외에 자에게 대부채권을 양도하는 것이 금지됨(법 제9조의4제3항, 시행령 제6조의4)
 - 1)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는 대부업자
 - 2) 여신금융기관
 - 3)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 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 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12조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대부채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주된 목적에 관해 법률안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으나, 부당한 채권추심 및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료됨

II. 세부내용 검토 – 대부채권 양도제한(2)

- 대부채권 양도제한은 대부업체의 자금조달방법에 변화를 가져옴
 - 기존 금융회사는 그 동안 특수목적법인(이하 “SPC”)을 설립하여 SPC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SPC는 해당 자금을 대부업체들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대부업체들에게 운영자금을 제공하였는데, 이때 대부업체는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대부채권을 SPC에 양도담보로 제공해왔음
 - 개정대부업법이 대부채권의 양도를 제한함으로써 SPC에 양도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됨.(이때 SPC는 대부채권의 양수인이 되지 못함)
- : 금융위도 “대부업법 제9조의4 제3항의 규정은 채권유동화를 위해 SPC에 채권을 양도하거나 채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유권해석 하고 있음(2016. 8. 30. 대부업법 제9조의4 제3항 채권 양도 대상의 제한에 대한 질의 회신)
- 이에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1안), SPC의 모회사인 금융회사가 양도담보를 취득하는 방법(2안) 등이 고려되고 있는데, 제3자 명의의 근저당 설정등기도 유효하다는 판결(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38938 판결 등)에 따라 2안이 유력함

II. 세부내용 검토 – 대부채권 양도제한(1)

- P2P 대출과의 연관성
 - 원리금수취권매매형 P2P 대출은 대부채권의 소유권은 대부업체가 보유하고 있고, 대부채권에서 파생된 원리금수취권만 투자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동 규정 적용은 배제됨
- 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정(제9조의4제3항)은 효력규정인가 단속규정인가?
 - 양도제한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징역 3년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나, 이를 무효로 하는 규정이 없음.
 - 따라서 엄격히 해석하면 단속규정에 해당함.
 - 불법추심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효력규정화할 필요가 있음

II. 세부내용 검토 – 이용자 보호기준(1)

7. 이용자 보호기준의 마련(제9조의7)

-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자등으로 자산규모가 500억 이상인 자는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보호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함
- 보호기준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보호기준 제·개정시 이사회(있는 경우에 한함)의 승인 필요

시행령 제6조의6제2항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의 보호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및 방법과 보호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보호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5. 법 제9조의7제2항에 따른 보호감시인(이하 "보호감시인"이라 한다)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
6. 대부채권 추심 관련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현재 별도 고시사항 없음)

II. 세부내용 검토 – 이용자 보호기준(2)

- 보호감시인의 자격(이사회 결의를 통해 선임)

법 제9조의7제4항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나. 금융 또는 법학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를 합산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자
 - 마. 그 밖에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일 것
3. 최근 5년간 이 법,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II. 세부내용 검토 – 이용자 보호기준(3)

- 보호감시인의 업무 : 보호기준을 지키는지를 점검하고, 보호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監査)

시행령 제6조의6제5항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13조제1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 2. 법령 준수 여부와 관련한 영업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개선 3. 임직원에 대한 교육 계획의 수립 4. 그 밖에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호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2. 업무 전반에 관한 접근 및 임직원에 대한 각종 자료나 정보제출 요구 3. 보호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 4. 보호기준 준수 관련 문제점이나 미비사항에 대한 경영진 또는 유관부서에 시정 건의 5. 중대한 위법·부당행위 발견 등 필요시 제재 의견 표명 6. 위법사항 등에 대한 업무정지요구 7. 필요시 이사회를 포함한 모든 업무회의 참여 및 적법성 등에 대한 의견 진술 8.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보호감시인의 금지사항 :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대부업 자등의 일상업무 등 금지

II. 세부내용 검토 – 이용자 보호기준(4)

- 보호감시인의 자격 관련 쟁점

- 나목과 다목의 경우 업무의 전문성 등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가목 및 라목의 경우 근무 경력을 전제로 하고 있음

- 근무지가 금융과 관련된 곳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해당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부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음. 특히 라목의 경우 5년의 근무경력과 퇴직후 5년이 경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과연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임

- 또한 보호감시인의 선임목적 중 하나는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실제 소비자 보호업무를 수행했던 단체 및 기관의 근무경력자는 배제하고 있음

: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13조에 따르면, 보호감시인의 임면시 금감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호감시인에게 직무수행과 관련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음

II. 세부내용 검토 – 손해배상책임 보장(1)

8. 거래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장

- 거래상대방에 관한 배상책임은 일반 불법행위책임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었으나, 대부업체 등이 폐업을 한 경우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점 등이 존재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공제포함)가입을 의무화함**

- 등록시 가입서류 제출 필요
- 예탁금 또는 보장금액 범위(필요시 증액가능)

1) 시·도지사 등록시 : **1천만원**

2) 금융위 등록시 : **5천만원**

: **영업종료 후 3년**, 소송진행시 확정판결에 따른 **지급이 종료되는 날까지 유지**해야 함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대부업법 제11조의4제1항은 “대부업자들은 대부업등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

- 손해의 원인이 **대부업자의 업무범위**에 있어야 함. 이에 따라 제11조의3의 사용자책임 뿐만 아니라 추심업무 등에서 발생한 손해도 포함됨

II. 세부내용 검토 – 손해배상책임 보장(2)

- 보증금 등의 지급절차(대부업등 감독규정 제16조)

- 손해를 입은 자가 가해 대부업자등과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또는 확정판결사본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부업협회에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

- 대부업협회는 해당 대부업자등이 예탁한 보증금의 한도내에서 배상금 지급

- 보증금 반환절차(대부업등 감독규정 제17조)

- 대부업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 대부업협회에 대해서 반환 신청서를 제출

- 대부업협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시

1. 해당 대부업자등의 보증금 반환신청사실 및 그 사유

2. 대부업등과 관련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공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부업자등이 예탁한 보증금에서 배분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

- 손해배상책임 보장 관련 쟁점

- 손해배상책임이 보장되는 범위가 예탁보증금등이 범위내로 한정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계약체결시 알릴 필요가 있음(시행령 제4조제1항 개정 사항)

- 보증금 반환요청시 대부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에서 보증금반환요청 사실을 통지 필요

III. 금융소비자보호법(안)(1)

1.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 입법예고(2016.6.28)

- 8개 장 75개 조문으로 구성

- 제1장 총칙 : 목적, 정의, 금융상품의 유형, 금융업자의 구분,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및 국가와 금융회사등의 책무
- 제3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등 : 등록하지 않은 자의 영업행위 금지
- 제4장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 일반원칙, 금융상품유형별 업종별 영업행위 규제 등
- 제5장 금융소비자보호 : 정책수립,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구성 및 역할, 금융교육, 금융분쟁조정
- 제6장 감독 및 처분
- 제7장 보칙 : 권한의 위탁 등
- 제8장 벌칙 : 형사벌, 과태료

III. 금융소비자보호법(안)(2)

2. 금융상품의 유형

- 개별 법률상 상품(금융투자상품, 예금, 대출, 보험상품)을 금융상품으로 정의하고(법안 제2조제1호), 이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법안 제3조)

구분	정의
보장성 상품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투자성 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예금성 상품	「은행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예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대출성 상품	「은행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출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 시설대여(금융리스) 등은 대출성 상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해당 상품과 일반 대출은 상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음
- 또한 대부업법상 대부업의 대부계약이 대출성 상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시행령에 위임

III. 금융소비자보호법(안) (3)

3. 금융업자의 유형

- 금융업을 금융상품판매업과 금융자문업으로 구분
- 금융상품판매업은 직접판매업과 대리·중개업으로 구분
 - 직접판매업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이하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이라 한다)을 영업으로 하는 것
 - 대리·중개업 :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구분	대상 금융업자
금융상품판매업	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신탁업자,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투자자문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투자권유대행인,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설계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모집인,
금융상품자문업자	투자자문업자

- 대부업의 경우 시행령에서 대부계약을 금융상품으로 지정하는 경우 **대부업자는 금융상품판매업, 대부중개업자는 대리중개업으로 분류 가능**

III. 금융소비자보호법(안) (4)

4. 영업행위 규제

4-1. 일반원칙(법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 해석기준, 신의성실의무, 차별금지, 관리책임 등을 규정
- 제16조의 관리책임의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그 임직원 및 위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준수해야할 기준 및 절차(시행령에서 규정된 사항)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함(미반영시 1억이하 과태료 처분. 법안 제73조제1항1호)

4-2.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법안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 부적합 상품의 구매권유 금지 및 고지(법안 제17조부터 제18조) : 전문금융소비자와 일반금융소비자를 구분하고, 상품별로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 파악

구분	파악해야할 정보
투자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자산 및 소득수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경험 등
대출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의 소득·재산, 부채상황, 신용 및 변제계획 등
보장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재산상황, 위험보장 수요 등

- 대출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에 있어 재산사항을 파악하는 것은 과도한 정보수집이며, 대출성 상품의 경우 변제계획도 포함하고 있어 과도한 조치로 생각함

III. 금융소비자보호법(안) (5)

- 설명의무(법안 제19조) : 상품유형별 중요정보를 예시하고, 해당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부여

구분	설명 의무 내용
대출성 상품	<p>가. 금리 및 변동 여부, 중도상환수수료(금융소비자가 대출만기일이 도래하기 전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부과 여부. 기간 및 수수료율 등 대출성 상품의 내용</p> <p>나.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 이자율. 시기</p> <p>다.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담보권 실행사유 및 담보권 실행에 따른 담보목적물의 소유권 상실 등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p> <p>라. 대출원리금, 수수료 등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총액</p> <p>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바. 제50조에 따른 계약 철회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p>

III. 금융소비자보호법(안) (6)

- 광고행위 규제(제22조) : 광고내용에 관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금지사항 예시(대출성 상품)

구분	내용
포함사항	<p>가. 거래조건</p> <p>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금지사항	<p>가. 대출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대출이자의 지급 및 부과 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을 명확히 표시하지 아니하여 금융소비자가 오인하게 하는 행위</p> <p>나. 대출이자, 수수료 등을 일할 등으로 표시하여 대출이자 등이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p>

- 광고규제를 위반한 경우 제62조의 과징금, 제74조의 과태료 처분을 받음
-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표시광고법 제3조1항의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또는 2.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데, 표시광고법은 법 위반시 과징금(제9조) 및 형사제재(제17조 2년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이때 형사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임

III. 금융소비자보호법(안) (7)

5. 손해배상, 계약철회 등

5-1. 손해배상책임

- 금융상품판매업자(법 제47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사용자책임(제48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의 개별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와 동일
- 손해배상액의 추정도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액추정과 동일함

5-2. 계약철회권(일반금융소비자만 대상, 법안 제50조)

-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대출성 상품의 경우 계약서류 제공 또는 대출실행일 중 늦은날로부터 14일 이내 계약의 철회 가능
- 금융상품자문의 경우 계약서류제공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철회 가능
- 수수료 등의 반환(대출성 상품) 및 계약철회 서면등의 발송(자문계약)을 한때에 계약철회의 효력발생
- 현재 4/4분기부터 약관개정의 방식으로 도입될 예정으로, 관련 TF에서 논의된 범위내에서 계약철회 가능 대출성 상품의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 리스계약, 신용거래(주식거래시)계약, 약관대출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논의됨

감사합니다

Q&A

EU소비자신용지침의 시행과 그 효과

- 유럽 금융소비자 권익변화를 중심으로 -

김도년*

목 차

I. 서론

II. EU 소비자 신용지침의 주요내용

1. 적용범위(지침 제2조)
2. 주요정의(지침 제3조)
3. 주요정보 및 정보제공조항
4. 계약관계의 해소와 정산관련 조항
5. 기타 주요 조항

III. EU 소비자 신용지침의 수용과 소비자 권익 변화

1. 회원국의 지침 수용과 이행점검
2. 회원국의 선택적 수용조항에 대한 검토
3. 회원국의 유럽 소비자 신용 정보 (European Consumer Credit Information) 도입
4. EU 소비자의 권익 변화

IV. 마치면서

I. 서론

EU는 1987년 소비자신용지침¹⁾을 처음 제정하였는데, 이후 1990, 1998년에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다.²⁾ 그런데 동 지침은 회원국에게 최소한의 입법기준(minimum requirements)만을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 회원국의 법률에 따라 소비자 보호의 수준 차이를 보여 왔다. 이와 같은 제도적 상황에서 EU 단일시장의 확대와 재화와 서비스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국가간의 사실적(de facto), 법적(de jure) 기준의 차이³⁾는 공동체 시장에서 신용제공자의 경쟁을 왜곡시키고, 그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였다. 유럽 소비자 신용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회원국 간에 이루어지는 신용 거래에 있어서 어느 국가의 법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발생하지 않아도 될 불측의 피해가 발생하였으

* 한국소비자원

1) Council Directive 87/102/EEC of 22 December 1986 for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consumer credit, OJ 1987/L 42/48.

2) Directive 90/88 (OJ 1990 L61/14) 및 Directive 98/7 (OJ 1998 L101/17)에 의해 각각 개정.

3)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07.9.14, 9948/07, Common position adopted by the Council with a view to the adoption of a DIRECTIVE 87/102/EEC, p.3.

며⁴⁾, 정보의 불충분한 제공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는 법적 분쟁 등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당좌대월(overdraft), 리볼빙(revolving) 등⁵⁾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신용 서비스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져서 기존의 법적 틀의 심각한 공백이 발생하였다.⁶⁾

이에 EU는 위 상황을 고려한 새로운 지침이 필요하였고,⁷⁾ 2008년 소비자신용지침(Directive 2008/48/EC, 이하 “소비자신용지침”이라 함)을 마련하였다.⁸⁾ 소비자신용지침은 EU 회원국 27개 국가는 지침이 효력을 발생하는 2010.5.12.까지 소비자 신용관련 국내법을 개정 또는 입법토록 하였다(지침 제27조(1)). 또한 소비자신용지침은 EU 위원회로 하여금 매 5년마다 조기상환시 기준액과 비율을 살펴보도록 하고 있고, 회원국의 선택적 수용조항(the regulatory choices of member state)이 회원국내 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다.(지침 제27조(2))⁹⁾

소비자관련 법제도는 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인식과 판단 없이 마련될 수 없다. 정부의 법령 및 제도가 소비자권익보호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과 수준이 각국의 시장과 소비자와 상관없이 동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권익보호지침도 이와 같은 점을 염두하고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제안하되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선택적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침이 유효한 시점부터 매 5년마다 이행점검 및 효과분석토록 하였다.

소비자신용지침은 높은 수준의 소비자보호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 소비자신용지침은 소비자의 자신감 회복, 소비자의 자유로운 신용제공자 선택보장, 회원국 간의 규제차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왜곡 현상 등을 해소 등의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지침의 내용을 만들었다. 소비자신용지침은 신용제공자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신용서비스를 받기 전 충분한 정보와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발표문은 2008년 및 2011년 소비자신용지침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EU 위원회의

4) Nebbia/Askam, EU Consumer law, oxford(2004), p.16.

5) EU Commission, MEMO/02/252(2002.11.13).

6) EU Commission, MEMO/07/192(2007.5.21).

7) EU 위원회는 소비자 신용에 관한 내용을 좀 더 투명하고 소비자 친화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토론자료를 배포하고 이해관계인의 청문절차를 거쳤다. 2002년 9월에 1차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몇 가지 주제에 대한 평의회의 정책논의를 거쳐야만 하였다. 2004년 유럽 의회가 수정안을 제시하였고 3년간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2007년 9월 EU집행위원회는 EU의회에 대하여 소비자 신용지침에 대한 최종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이 개정안은 2008.1.16. 유럽 의회에서 승인되었고, 4.7. 유럽 평의회에서 비준되었다. 그리고 2008.4.23.자로 공포되었다.

8) Directive 2008/4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23 April 2008 on credit agreements for consumers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87/102/EEC (OJ 2008 L133/66).

9) 소비자신용지침 제27조(2)는 2013년 5월 12일에 첫 검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4년 5월 14일에 EU 위원회는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n the implementation of Directice 2008/48/EU on credit agreement for consumers”를 작성한다. EU 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는 Study on functioning of the consumer credit market in Europe 및 Study on the Impact of the Legal Choices of the Member States and other Aspects of Implementing the Directive 2008/48/EC on the Functioning of the Consumer Credit Market in the European Union 등에 기초하고 있다.

2014년 소비자신용지침 이행점검 보고서를 통해 소비자신용지침의 목적 달성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소비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법령 및 제도적 시사점을 살펴본다.

II. EU 소비자 신용지침의 주요내용

1. 적용범위(지침 제2조)

이 지침은 일반적인 소비자 신용계약(consumer credit agreement)에 적용된다. 신용계약은 신용제공자가 소비자와 거치 거래(deferred payment), 론(loan), 이에 준하는 금전 대차(financial accommodation)의 형태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있어서 할부적인 방법으로 지급하는 계약은 적용에서 제외된다.¹⁰⁾

‘당좌대월(overdraft facility)’은 신용제공자가 명시적으로 소비자의 현재 자금상태가 채무초과가 되더라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신용계약을 의미하고 ‘목시적 초과(overrunning)’란 채무초과가 되거나 당좌 계약의 범위를 초과한 지급요청에 대하여 목시적으로 지급하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

견련 신용계약(linked credit agreement)은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에 부합하여 발생하는 신용계약이거나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하여 공여하는 신용계약을 말한다.

소비자신용지침은 일반적인 소비자 신용계약에 적용되지만, 원금이 200유로 미만이거나 75,000유로를 초과하는 신용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금액은 금융수수료를 포함하지 않는 순(net) 대역액¹¹⁾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mortgage) 또는 주택임차, 유가증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얻기 위한 부동산담보 신용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에 무이자 혹은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대가로 이루어지는 신용계약, 지침 2004/39/EC¹²⁾ 4조 1항에 규정된 투자회사 또는 신용제공업에 관한 지침¹³⁾ 4조에서 규정된 신용기관과 체결한 신용계약, 이미 존재하고 있는 채무에 대한 신용계약 등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1월내에 반환되어야 하는 당좌대월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3개월 이하의 계약은 일정한 규정만 적용된다(제2조 3항).

10) Buelow/Artz, Verbraucherprivatrecht, C.F. Mueller(2003), p.81.

11) Godefroid, Verbraucherkreditvertraege(3. Aufl.), C.H.Beck(2008), p.58.

12) DIRECTIVE 2004/3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1 April 2004 on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amending Council Directives 85/611/EEC and 93/6/EEC and Directive 2000/1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93/22/EEC, OJ 2004 L 145/1.

13) Directive 2006/4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June 2006 relating to the taking up and pursuit of the business of credit institutions, OJ L 177, 30.6.2006, p. 1. Directive as last amended by Directive 2008/24/EC OJ L 81, 20.3.2008, p. 38.

2. 주요정의(지침 제3조)

소비자는 지침의 적용을 받는 거래에 있어서 거래, 사업, 직업적인 이유없이 거래의 목적을 갖고 행위하는 자연인을 말한다. 신용제공자(Creditor)는 거래, 사업, 직업상 신용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정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소비자신용지침은 신용중개자도 소비자 신용계약의 당사자로 보고 있다. 신용중개자(credit intermediary)는 신용제공자가 아닌 법인 또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소비자 신용거래를 중개하거나 제공하는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나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3. 주요정보 및 정보제공조항

공정한 신용거래의 체결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신용거래의 목적물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부정확하거나, 모호하거나 위조된 정보를 가지고는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¹⁴⁾. 따라서 소비자는 신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신용제공자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한다.

(1) 광고시 포함되어야 할 표준정보(지침 제4조, Standard Information)

지침 4조에 의하면 소비자 신용 거래에 관한 광고는 소비자가 이자율, 총액, 신용수수료, 신용기간, 할부거래의 경우에는 일시불 현금가격 등 중요한 정보를 비교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완전한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신용중개자가 광고를 함에 있어서는 그가 '중개'업을 한다는 것을 명시하며 그가 얼마만큼의 수수료를 받는지를 소비자에게 밝히도록 감독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체결전 정보제공(지침 제5조, Pre-contractual Information)

계약체결 전에 신용제공자와 신용중개자는 약관을 포함하여 소비자에게 계약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소비자가 신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정보는 진실에 기초하여야 한다. 지침은 소비자 신용에서 제공되는 표준 정보(standard information)를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표준화를 통하여 소비자는 유럽시장에서 제공되는 소비자 신용에 대한 비교를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¹⁵⁾.

14) Meier/Garman/Keiser, Regulation and Consumer protection, Thomson (2003), p.341.

15)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Press 7993/08(2008.4.7).

(3) 특정 계약에서의 계약체결전 정보제공(지침 제6조, Pre-contractual Information for certain credit agreement)

소비자신용지침 제6조(1)은 소비자신용지침 범위내 신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신용제공자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금융상품 비교정보를 제공하여 불완전한 신용계약체결을 방지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소비자신용지침에서 정하는 이와 같은 정보는 소비자신용지침 별표 3에 정한 양식인 “유럽 소비자 신용 정보(European Consumer Credit Information, 약칭 SECCI)”의 형태로 제공된다.

(4) 계약시 정보제공(지침 제10조, Information and rights concerning credit agreements)

계약서는 서면 또는 기타 내구성 있는 수단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며, 계약당사자는 사본(copy)을 각각 가진다. 계약서에는 신용계약의 종류, 신용제공자 또는 중개업자의 이름과 주소, 신용기간, 총액, 할부거래의 경우 현금가격, 이자율, 수수료율, 연체율, 철회권의 존재, 조기상환 절차, 기타 약관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만일 허위정보가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지침 제23조에 따라 국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5) 이자율에 관한 정보(지침 제11조, Information concerning the borrowing rate)

이자율(borrowing rate)은 원금에 대한 고정 내지 변동으로 표현된 금리를 말한다. 고정 이자율(fixed borrowing rate)이란 신용제공자와 소비자가 신용제공 기간 전부 또는 일부 기간에 적용하는 동일한 이자율을 말한다. 소비자 신용계약의 투명성을 위해서 소비자는 이자율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것은 계약체결전과 계약체결이 이루어진 때 모든 시기에 해당한다. 즉 소비자들에게 광고 내지 계약체결 단계에서의 정보 제공시, 그리고 계약서에 반드시 그 이자율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만일 이자율의 변동이 생겼을 때 신용제공자는 서면이나 전자적 문서 등의 방법으로 이자율과 함께 그에 따른 상환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6) 연간 금융수수료율(APR)의 공시

EU 소비자 신용지침(Directive 2011/90/EU)를 채택하여 연간 금융수수료율(annual percentage rate of charge: APR)을 표시토록 하였다.¹⁶⁾ 지침은 소비자신용 총비용(total cost of the credit to the consumer)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 신용의 총 비용은 이자, 수수료(커미션), 세금 기타 신용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지불하

16) 2011년 11월 14일 Directive 2011/90/EU 지침은 Directive 2008/48/EC의 Part II Annex I 수정하여 연간 금융수수료 추정금액을 표시토록 하였다.

는 모든 비용 가운데에서 공증비용 등을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지침 제3조 g항). 그리고 연간 금융수수료율(Annual Percentage Rate of Charge, APR)은 매년 지불하여야 하는 소비자 신용 총비용을 원금을 토대로 비율로서 나타는 것을 말한다. 즉 APR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모든 원금에 따른 이자와 각종 수수료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침은 연간 금융수수료율을 산정하는 공식¹⁷⁾을 규정하고 있다. APR을 구하는 공식을 새롭게 규정한 이유는 하나의 역내시장 내에서 소비자 신용계약의 소비자를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해석되고 있다.¹⁸⁾

4. 계약관계의 해소와 정산관련 조항

(1) 청약철회권(지침 제14조, Right of withdrawal)

지침은 소비자를 충동적 신용계약 체결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철회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철회권은 소비자 신용에 있어서의 소비자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¹⁹⁾ 소비자는 계약 체결일 또는 계약 체결 후 지침 제10조에서 규정된 약관과 정보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동안 소비자 신용계약에 대한 철회권을 가진다. 철회의 이유는 묻지 않으며, 14일의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철회의 의사표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하며, 철회의 의사표시가 있는 후 30일 이내에 반환일까지의 일할계산된 이자와 함께 대여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기한을 정하지 않은 신용계약의 해지(제13조, Open-end credit agreements)

기한을 약정하지 않은 신용계약은 소비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단, 양 당사자의 합의로 1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의 해지통고기간을 정할 수 있다. 계약에 정해져 있다면 신용제공자는 2개월 전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통고한 뒤 해지할 수 있다. 계약에 정해져 있다면 신용제공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소비자의 해지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때 정당한 사유는 회원국 법률이나 공익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통지되어야 한다.

(3) 조기상환권과 항변권(지침 제16조, Early repayment, 지침 제17조 Assignment of rights)

소비자는 언제든지 대차금의 조기 상환권을 갖고 있다. 그런데 대차금을 조기 상환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수료를 얼마나 공제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하며, 신용제공자가 받는 손해가

17) Directive Annex 1.

18) Directive, whereas 43.

19) EU Commission, MEMO/07/192(2007.5.21).

있다면 어떠한 범위까지 배상을 하여야 하는지가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직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침 제16조에 따르면 조기 상환의 경우에는 이자와 잔여기간의 비용을 계산하여 금융수수료 총액을 공제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조기 상환으로 인하여 신용제공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적절한 배상이 필요하다.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조기 상환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는 상환금의 1%(12개월 내에 조기상환할 경우에는 0.5%)를 넘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있고, 1년에 10,000€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채권이 양도되는 등 채권자가 제3자로 변경되었을 경우 소비자는 회원국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 채권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항변권으로 새로운 채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5. 기타 주요 조항

(1) 신용정보의 이용(지침 제9조, Database access)

계약체결에 앞서 신용제공자는 소비자로부터 획득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각 회원국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한 충분한 정보에 의하여 신용대출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대출이력을 포함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신용제공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²⁰⁾. 새 지침이 적용될 때에 각 회원국이 기준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 신용제공자가 특정한 신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접근을 허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용제공자의 신용거래의 위험과 관련해서는 신용제공업에 관한 지침²¹⁾이 따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및 가족과 직업생활의 보호 등 소비자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는 EU 기본권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의 원칙을 최대한 준수한다.

(2) 원격지간 소비자 신용계약의 체결

소비자 신용계약은 원격지간에 체결될 수도 있다. 특히 하나의 공동체 시장으로 이루어진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외국의 소비자 신용기관과 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빈번할 것이다. 이때 소비자가 차별 없이 충분한 보호를 받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원격지간에 체결된 신용계약에 있어서 입증의 문제나 철회권의 문제가 발생할 우

20) Spanogle/Rohner/Pridgen/Sovern, Consumer Law, Thomson(2007), p.280.

21) Directive 2006/4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June 2006 relating to the taking up and pursuit of the business of credit institutions, OJ L 177, 30.6.2006, p. 1. Directive as last amended by Directive 2008/24/EC OJ L 81, 20.3.2008, p. 38.

려가 크기 때문이다. 지침 2002/65²²⁾는 원격지간 소비자 신용계약에 있어서 주로 통신매체를 통한 계약체결시 필요한 법적 규율을 다루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계약체결전에 소비자는 공급자의 주소 등 인적사항, 금융서비스의 종류와 금액, 가격 등의 정보, 원격거래시 철회권 행사여부 및 준거법의 선택, 언어,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또한 신용제공자는 서면 등 고정매체(durable medium)를 통하여 청약의 유인이나 광고시에 약관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원격거래 체결일로부터 14일간의 철회권 행사를 보장하여야 하며, 지침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사업자가 입증책임을 지며, 소비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사법, 행정적 구제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III. EU 소비자 신용지침의 수용과 소비자권의 변화

1. 회원국의 지침 수용과 이행점검

EU 회원국은 EU 소비자 신용지침(Directive 2008/48/EC) 내용을 동 지침 제27조(1)에 따라 2010년 5월 11일 이전까지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편입시켜야 했다. EU 소비자 신용법은 지침(Directive)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EU법상 지침의 효력은 회원국 국민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으나, 그 지침에서 정한 기간까지 각 회원국이 국내법으로 입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국에 대한 구속력이 있다. 입법의 방법이나 형식을 회원국의 자유재량에 맡기고 있는 것이지만, 내용적 측면에서는 지침을 따라야 한다.²³⁾ 이를 통하여 회원국 법률의 조화(harmonization)를 극대화 하려는 목적이다.

20개국은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소비자신용지침을 수용하였고, 나머지는 기존의 법령 개정을 통해서 수용을 하였다. EU 위원회는 각 회원국이 지침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인 결함은 없었다고 평가하였으나, EU 위원회의 사전조사에서는 다수의 회원국이 지침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지침의 내용을 누락시키거나 불완전하게 수용한 사실을 있음을 확인하였다.²⁴⁾

그런데 사법의 영역, 특히 계약법과 손해배상의 경우 많은 부분이 회원국의 개별 시스템에 여전히 유보되어 있으므로 소비자 계약에 있어서도 그러한 조화의 노력에 비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오는 것은 쉽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²⁵⁾ EU 회원국이 소비자신용지침

22) DIRECTIVE 2002/6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September 2002 concerning the distance marketing of consumer financial services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0/619/EEC and Directives 97/7/EC and 98/27/EC, OJ 2002 L 271/16.

23) Craig/De Burca, EU Law(4.ed), oxford(2008), p.85.

24) EU 위원회는 각 회원국에게 소비자신용지침의 수용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각 회원국에 대하여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부분의 수정을 요청한 바 있다. EU 위원회의 요청을 거절하는 회원국에 대해서는 위반에 따른 제재절차를 밟고 있다.

25) Nebia/Askham, EU Consumer law, p.237.

을 수용함에 있어서 전체가 아닌 일부만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하나의 예인데, 소비자신용지침은 EU 회원국으로 하여금 거래 당사자 사이의 정보제공조항, 청약철회, 조기상환조항 등에 대해서는 지침대로의 수용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회원국의 선택적 수용조항에 대한 검토

EU 위원회는 EU 소비자 신용지침(Directive 2008/48/EC) 제27조(2)에 근거하여 매 5년마다 조기상환시 기준액과 비율을 살펴보도록 하고 있고, 회원국의 선택적 수용조항(the regulatory choices of member state)이 회원국내 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다.²⁶⁾ 회원국이 선택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조항은 제2조(5), 제2조(6), 제4조(1), 제4조(2)(c), 제6조(2), 제10조(1), 제10조(5)(f), 제14조(2), 제16조(4) 등이다. EU 위원회는 회원국이 동 규정에 근거하여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경우 회원국내 시장과 소비자를 반드시 모니터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7조(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회원국간 상호 이익을 위한 기구들 사이의 신용계약 등에서의 제한적 적용(지침 제2조(5))

6개국(Cyprus, Ireland, Lithuania, Latvia, Romania, UK)은 제2조(5) (a)부터(e)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상호 이익을 위하여 설립한 기관들 사이의 신용계약에 지침의 일부내용을 배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전문기관들은 해당 국가의 시장과 소비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다른 신용제공기관들보다 덜 공격적이고 낮은 여신이자로 운영하는 기관들의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줄였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경쟁 촉진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시켰다는데서 그 이유를 찾는다.

물론 전문가들은 해당 조항을 선택적 수용한 국가들이 신용제공자들 사이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관한 사항, 입법원칙으로서 완전 조화, 법의 명확성 및 집행용이성 등에 대한 잠재적 부정적인 요소도 있음을 지적한다.

(2) 할부상환 등 방법에 관한 별도의 합의에서의 제한적 적용(지침 제2조(6))

18개국(Belgium,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Germany, Greece, Italy, Latvia, Lithuania, Luxembourg, Malta, Poland, Portugal, Romania, Slovakia, Slovenia,

26) 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는 Study on functioning of the consumer credit market in Europe 및 Study on the Impact of the Legal Choices of the Member States and other Aspects of Implementing the Directive 2008/48/EC on the Functioning of the Consumer Credit Market in the European Union 등에 기초하고 있다.

Spain)은 소비자가 제2조(6) (a)와 (b)를 충족하는 최초의 신용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할부거래(deferred payment)나 상환방식(repayment method)에 대한 합의된 신용계약에 지침의 일부내용을 배제하고 있다(제2조(6)).

동 규정의 목적은 소비자가 할부거래 또는 상환방식 변경 등의 방법을 희망하는 경우 신용제공자가 상호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업자를 동기부여하기 위함이다. 동 조항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해관계자들은 해당규정의 실질적 적용에 대하여 크게 인식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왜냐하면 회원국의 일부에서는 해당 조항은 이미 시장에서 통용되는 거래형태였기 때문이다. 온라인 조사의 응답자 15%는 해당 조항의 선택적 적용이 소비자보호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평가하였고, 응답자 5%는 부정적일 것이라고 평가하였을 뿐이다.

(3) 이자율이나 기타 비용을 나타내지 않은 광고에 표시되어야할 연간 금융수수료율 (APR) 제시 조항의 제한적 적용 (지침 제4조(1))

4개국(Cyprus, Hungary, Sweden, UK)은 신용계약광고시 연간 이자율이나 기타 비용을 제시하더라도 금융수수료율을 게시토록 하고 있다(제4조(1)). 즉 이들 국가들은 신용계약광고시 이자율이나 기타 수수료 등을 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4(2)의 표준정보(standard information)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연간 금융수수료율을 제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회원국의 선택적 수용조항의 특별한 효과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한다. 다만 연간 금융수수료율을 광고에 게시하여 얻는 효과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간결하고 선명해졌다는 점과 다른 금융상품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모든 소비자가 광고에 기재되는 연간 금융수수료율은 단지 대표적인 예시(representative example)로서 표시된 비율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실제로 수령할 정확한 금액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4) 광고, 그리고 신용거래 계약전 및 계약시에 있어서 연간 금융수수료율 제공 조항(지침 제4조(2)(c), 제6조(2), 제10조(5)(f))

당좌대월(overdraft facility) 신용계약의 경우, 신용제공의 요청 또는 3개월 이내에 즉시 변제되어야 하는 경우, 지침의 제1조부터 제3조, 제4조(1), 제4조(2)(a)부터(c), 제4조(4), 제6조부터 제9조, 제10조(1), 제10조(4), 제10조(5), 제12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부터 제32조까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8개국(Bulgaria, Denmark, Ireland, Luxembourg, Malta, Poland, Spain, UK(England and Wales, Scotland, Northern Ireland))는 당좌대월 신용계약의 경우라도 광고시 연간 금융수수료율을 제공토록 하였다. 또한 10개국(Croatia, Denmark, Germany, Ireland, Luxembourg, Malta, Poland, Slovakia, Spain, UK(England and Wales, Scotland,

Northern Ireland))는 당좌대월 신용계약의 경우라도 계약체결전에 제공해야할 정보로써 연간 금융수수료율을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11개국(Czech Republic, Germany, Denmark, Luxembourg, Spain, Ireland, Malta, Netherlands, Poland, Slovakia, UK(England and Wales, Scotland, Northern Ireland))은 당좌대월 신용계약시에 제공해야할 정보로서 연간 금융수수료율을 포함시켰다.

회원국의 연간 금융수수료율 추가제공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연간 금융수수료율이 유용성에 대한 입장에 따라 의견을 달리한다. 이해관계자들은 회원국의 지침의 예외적 적용으로 연간 금융수수료율 제공 효과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원국내 신용시장이나 소비자들에게 영향이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왜냐하면 지침 제2조(3)에서 규율하는 신용계약은 대체로 일부 회원국가에서 특정 신용제공자와 소비자가 이용하는 “틈새시장”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연간 금융수수료율과 그 이외의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여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연간 금융수수료율 제공 효과를 근본적으로 분석할 수 없다고 본다.

더 나아가 회원국들의 선택적 수용조항에 대한 판단은 적절한 수준의 소비자보호와 신용제공자의 부담을 줄이는 사이의 균형을 고려에서 출발한다. 실제로 만일 신용계약 체결시 반드시 연간 금융수수료를 계산하여 제공할 것이 요구된다면, 신용제공자와 산업계는 추가적인 비용발생과 물품의 가격인상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이와 달리 연간 금융수수료의 표시가 금융상품의 비교와 결정에 도움이 된다는 시각에서는 회원국이 선택적 수용조항을 통해 다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나, 이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한다.

(5) 신용거래체결의 유효성에 관한 조항(지침 제10조(1))

모든 회원국들은 지침 제10조(1)에 따라 체결한 신용계약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근거하고 있다. 때문에 모든 회원국은 전자서명으로 체결된 신용계약의 유효성을 인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용자들의 인터넷 및 온라인 활동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체결은 소비자후생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독일에서는 기명날인된 계약서가 높은 수준의 소비자보호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신용의 전자적 규정과 관련한 부정적인 경험을 고려한 것으로, 북유럽 국가에서는 SMS 신용계약도 널리 확대되어 있다. 현재 회원국들은 여전히 서면으로 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6) 건련신용계약에 있어서 청약철회권의 제한적 적용(지침 제14조(2))

3개국(France, Romania, Slovenia)는 이미 소비자의 명시적인 요청으로 철회기간을 14일 미만으로 할 수 있어 펀드가 일정기간 도과되기 전에 소비자에게 유효할 수 없는 회원국의 법률적 환경에서 건련 신용계약을 이미 규율하고 있음을 이유로 청약철회권과 관련한 지침을 선택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다.

소비자신용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

이와 같은 선택적 수용은 소비자에게 물품(서비스 포함)을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미 유효한 국내법을 유지시키도록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동 조항은 신용제공자들에게 명확한 원칙을 전달한다. 소비자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청약철회기간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본다. 동시에 거래에 확신이 있는 소비자는 보다 편리하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선택적 조항의 실질적 적용과 이 조항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지 못한다.

(7) 금융소비자의 조기상환과 신용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지침 제16조(4))

17개국(Austria, Croatia, Cyprus, Finland, Greece, Hungary, Ireland, Italy, Latvia, Lithuania, Luxembourg, Malta, Poland, Slovakia, Slovenia, UK)은 조기상환금액이 각 회원국 국내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신용제공자가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침 제16조(4)을 수용하였다. 그리고 9개국(Bulgaria, Cyprus, Denmark, Lithuania, Luxembourg, Malta, Netherlands, Spain, UK(Gibraltar))은 조기상환시 예외적인 경우에 신용제공자가 고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침 제16조(4)(b) 규정을 수용하였다. 5개국(Cyprus, Lithuania, Luxembourg, Malta, UK(Gibraltar))등은 위 두 가지 내용의 지침을 수용하고 있다.

이해관계자들은 제16조(4)(a)와 (b)에서 정하고 있는 선택적 수용조항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어떠한 영향이 있었다고 분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6조(4)(b) 규정을 수용한 회원국 대부분은 신용제공자와 소비자에 대하여 명확한 원칙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회원국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의 조기상환 결과에도 불리한 지위에 놓이지 않는 신용제공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앞서 보다 엄격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국가의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한다.

3. 회원국의 유럽 소비자 신용 정보(European Consumer Credit Information) 도입

소비자신용지침 제6조(1)은 소비자신용지침 범위내 신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신용제공자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금융상품 비교정보를 제공하여 불완전한 신용계약체결을 방지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소비자신용지침에서 정하는 이와 같은 정보는 소비자신용지침 별첨 3에 정한 양식인 “유럽 소비자 신용 정보(European Consumer Credit Information, 약칭 SECCI)”의 형태로 제공된다. 10개국(Belgium, Bulgaria, Croatia, Hungary, Ireland, Lithuania, Luxembourg, Portugal, Slovenia, Slovakia)에서는 특정 신용계약에서만 SECCI를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은 SECCI가 소비자보호 및 상품정보비교 등에 효과적이라고 한다. SECCI의 강제적 사용은 소비자의 채무불이행 비율을 낮추고, 온라인 신용계약을 원활하게 하였으며, 국제적인 신용시장에 투명성과 경쟁을 증가시켰다고 평가되고 있다.

다만 SECCI의 효과를 저해하는 요소로 SECCI에 대한 소비자의 금융이해력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다.

신용제공자들은 판매 및 관리 비용의 증가를

4. EU 소비자의 권익 변화

소비자신용지침 도입 이후, 조사대상이 된 규제기관은 대부분의 신용제공자가 영업시 행위의무를 잘 인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다만 조사 규제기관의 50%는 신용제공자의 행위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단지 20%만이 2010년~2011년에 제재조치를 하였다고 한다. 규제기관의 70%만이 신용제공자가 실제로 영업상 행위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고 한다. 신용제공자의 주요 행위의무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광고단계에 있어서 정보제공

소비자신용지침 제4조는 소비자신용상품의 광고시 필요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있으나, 회원국의 일부는 수수료 정보를 생략할 수 있고, 연간 금융수수료율(APR)만 제공할 수도 있는 등 회원국 사이의 기준이 동일하지 않다. 또한 신용상품의 종류에 따라 필요정보가 다르고 규제수준의 차이가 있다. 때문에 금융정보를 포함하는 광고의 22%만이 필요정보 요건을 맞추고 있을 뿐이었다. 전반적으로 신용제공자의 종류, 신용의 종류와 상관없이 많은 금융광고들이 지침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소비자에게 적절한 비교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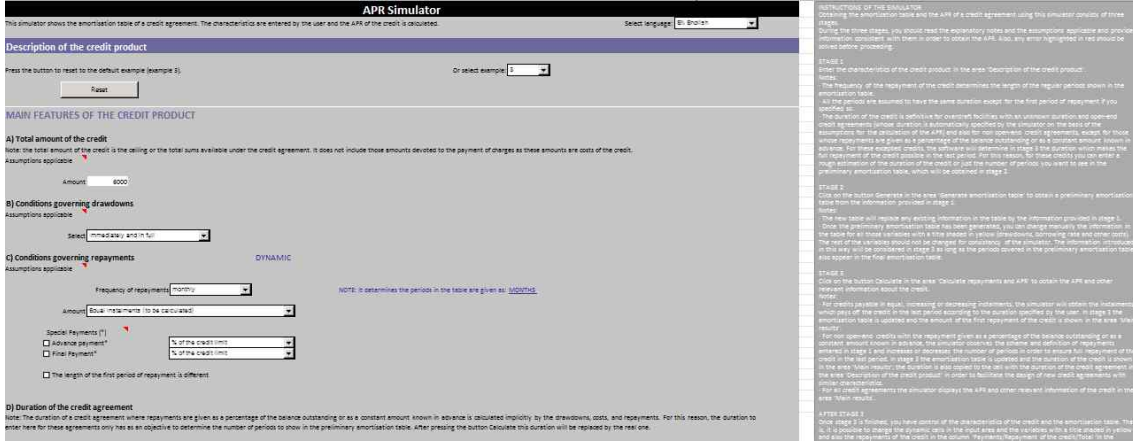
(2) 연간 금융수수료율과 예시 등 정보제공

대부비용을 포함하고 있는 금융광고의 73%만이 대표예시를 들고 있었는데, 신용카드 광고가 지침의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 회원국의 경우 특정 금융상품에서 대표예시를 포함한 연간 금융수수료율을 100% 이행하기도 하였다.

한편 EU 위원회는 EU 홈페이지에서 연간 금융수수료율 계산 프로그램(엑셀)을 제공하고 있는 바²⁷⁾, 금융광고에서 제시하는 이율 등을 넣어 광고에 기재된 연간 금융수수료율을 비교해 보면 평균 0.35%의 오차가 있다.

27) http://ec.europa.eu/consumers/financial_services/consumer_credit_directive/index_en.htm

<연간 금융수수료율 계산 프로그램 화면 예시>



(3)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의 정보제공

소비자신용지침 제5조는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 적절한 시점에 신용제공자가 소비자에게 필요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정보는 신용상품의 비교를 손쉽게 하게 하여 소비자로서 하여금 현명한 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소비자가 SECCI 양식을 얻게 된다면 계약체결 전 필요정보를 모두 얻는 것이 된다.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의 정보제공 유무는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서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신용제공자가 소비자에게 14일 이내에 신용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대략 11%만이 철회 관련 정보를 제공). 또한 조사자의 80%는 연간 금융수수료율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조사자 50%는 중국적인 신용제공자의 권유 이후 계약체결 직전에 SECCI 양식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소비자신용지침상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의 정보제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주목할 것은 신용제공자가 소비자의 필요나 교육수준 등을 고려하기보다, 소비자의 직업, 수입, 부동산 소유 여부 등만을 고려하였다는 점이다.

(4) 청약철회권과 조기상환청구권

소비자신용지침 제14조는 소비자가 14일 이내에 신용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신용제공자의 공격적인 상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인 동시에, 신용제공자들로 하여금 경쟁을 유도시키는 기능을 한다. 소비자조사에 따르면 대략 1% 소수의 소비자만이 소비계약 체결이후 철회를 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이들 중 42.2%는 철회에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소비자신용지침 제16조는 소비자가 조기상환하여 신용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소비자가 자신의 채무를 관리하는데 매우 용이하게 하였으며, 신용제공자들로 하여금

경쟁을 유도시키는 기능을 한다.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에 따르면 소비자의 조기상환은 매우 드문일이라고 하며, 소비자조사에서도 25% 정도가 조기상환을 시도하였고, 이들 중 86%가 성공하였다고 한다.

IV. 마치면서

EU 소비자신용지침은 판매방식이 아닌 물품(금융서비스) 자체가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소비자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EU 소비자신용지침은 금융상품의 거래단계마다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과 청약철회권 및 조기상환권 등의 핵심 권리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지침이다. 특정 범주의 금융상품에 한정되어 적용되고 있으나, 금융상품의 광고- 계약체결 전 - 계약체결시 등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마다 제공해야할 정보와 방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금융관련 제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정보내용 중 단순이자율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부담해야할 연간 금융수수료를 정보제공토록 하고, 이를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등도 주목할 부분이다.

다만 소비자신용지침의 수용과정에서 회원국의 개별적인 수용으로 인하여 지침의 목적달성의 한계가 있다고 보이며, 연간 금융수수료율의 제공이 과연 소비자권익향상에 실질적이었는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사전설명의무나 표시 및 광고기준에서는 사업자가 입법과정에서의 빈틈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오히려 연간 금융수수료율 정보제공으로 소비자가 알아야할 정확한 비용부담을 알지 못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소비자권익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었다.

EU 소비자신용지침은 소비자에게 신용계약에서 손쉽게 벗어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청약철회권과 조기상환권이 그러하다. 그러나 EU 위원회의 이행점검 과정에 당해 권리가 잘 설명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사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금융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는데 필수적인 제도인 동시에 소비자의 가계부채 관리 및 불완전한 신용계약으로부터 보호 기능 등을 하는 등 제도가 실제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신용지침이 다양한 소비자권익 증진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금융소비자의 역량이 낮은 경우, 사업자의 소비자 권익 침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점, 더 나아가 제도의 취지 자체가 몰각 될 여지가 있다는 조사결과 역시 참고할 만하다.

소비자법이 시장상황과 거래 당사자의 역량에 기초하고 있는 법률인 만큼, 당위적인 권리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시장과 소비자 그리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모든 정책은 법률을 통해 구체화되며, 법률시행 후 입법평가를 통해 향후 제도개선을 정책적으로 도모해야 할 것이다.